

정책연구
2022-07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홍민기·손연정·김문정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 | |
|---|----|
| 요 약 | i |
| 제1장 서 론 (홍민기) | 1 |
| 제1절 연구 목적과 구성 | 1 |
| 제2장 자영업자 현황 (홍민기) | 3 |
| 제1절 서 론 | 3 |
| 제2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의 | 4 |
| 제3절 자료별 사업체 수 및 자영업자 통계 | 6 |
| 1. 자료별 정의와 포괄범위 | 6 |
| 2. 사업체 수 통계: 국세통계 | 9 |
| 3. 사업체 수 통계: 사업체 조사자료와 행정통계 | 14 |
| 제4절 코로나19의 확산과 생활 사업자 변동 | 16 |
| 제5절 자영업자 소득: 총소득 | 19 |
| 제6절 요약 및 결론 | 21 |
| 제3장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및 소득변동 (손연정) | 24 |
| 제1절 들어가며 | 24 |
| 제2절 분석자료 및 표본 | 25 |
| 제3절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분석 결과 | 26 |
| 제4절 노동이동에 따른 소득변동 분석 | 37 |

| | |
|--|----|
| 제5절 소 결 | 46 |
| 제4장 자영업자 경비율 연구 (김문정) 48 | |
| 제1절 연구 목적과 범위 | 48 |
| 제2절 경비율 제도와 고시 경비율 현황 | 50 |
| 1. 경비율 제도 | 50 |
| 2. 고시 경비율 현황 | 59 |
| 제3절 조사된 경비율과 고시 경비율 비교 | 60 |
| 1. 분석자료 | 60 |
| 2. 분석결과 | 64 |
| 제4절 소결 및 정책 함의 | 73 |
| 1. 내용 요약 | 73 |
| 2. 정책 함의 | 76 |
| 제5장 요약 및 결론 (홍민기 · 손연정 · 김문정) 78 | |
| 제1절 요 약 | 78 |
| 제2절 결론 및 제안 | 80 |
| 참고문헌 | 83 |

표 목 차

| | |
|--|----|
| <표 2- 1>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 4 |
| <표 2- 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범위 | 5 |
| <표 2- 3> 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의 포함 범위 | 7 |
| <표 2- 4> 2019년 사업자(가동사업자) : 국세통계 | 10 |
| <표 2- 5> 주요 업종 신규 및 폐업 개인사업자 수 변화 | 12 |
| <표 2- 6> 자료: 국세청 발표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 | 16 |
| <표 2- 7>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감소 업종(10개) | 16 |
| <표 2- 8>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감소 업종(10개): 감소율 기준 | 17 |
| <표 2- 9>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증가 업종(10개) | 18 |
| <표 2-10>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증가 업종(10개): 증가율 기준 | 18 |
| <표 2-11>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 소득 비교 | 20 |
| | |
| <표 3- 1>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비중 | 26 |
| <표 3- 2>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비중 | 27 |
| <표 3- 3>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8→2019년) .. | 28 |
| <표 3- 4>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9→2020년) .. | 28 |
| <표 3- 5>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8→2020년) .. | 28 |
| <표 3- 6>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8→2019년) .. | 29 |
| <표 3- 7>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9→2020년) .. | 29 |
| <표 3- 8>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8→2020년) .. | 29 |
| <표 3- 9>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 60세 미만(2018 →2020년) | 32 |

| | |
|--|----|
| <표 3-10>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60세 이상 (2018→2020년) | 32 |
| <표 3-11> 소득계층별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 저소득(2018→2020년) | 34 |
| <표 3-12> 소득계층별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 중간소득(2018→2020년) | 35 |
| <표 3-13> 소득계층별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 고소득(2018→2020년) | 35 |
| <표 3-14>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5→2016년) .. | 36 |
| <표 3-15>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5→2017년) .. | 36 |
| <표 3-16>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5→2020년) .. | 37 |
| <표 3-17> 한국노동패널조사 가구소득 항목 | 38 |
| <표 3-18> 종사상지위 변동(2018~2019년)에 따른 소득 변화 (월평균 소득) | 39 |
| <표 3-19> 종사상지위 변동(2019~2020년)에 따른 소득 변화 (월평균 소득) | 40 |
| <표 3-20> 종사상지위 변동(2018~2020년)에 따른 소득 변화 (월평균 소득) | 41 |
| <표 3-21> 종사상지위 변동(2018~2019년)에 따른 소득 변화 (작년 한 해 균등화 가구소득) | 42 |
| <표 3-22> 종사상지위 변동(2019~2020년)에 따른 소득 변화 (작년 한 해 균등화 가구소득) | 43 |
| <표 3-23> 종사상지위 변동(2018~2020년)에 따른 소득 변화 (작년 한 해 균등화 가구소득) | 44 |
| | |
| <표 4- 1>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상한 | 52 |
| <표 4- 2> 복식부기 의무기준 및 경비율 적용 기준 | 53 |
| <표 4- 3>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비율 적용기준 | 55 |
| <표 4- 4> 주요경비 정의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 57 |
| <표 4- 5> 분석자료의 대분류 업종별 사업체 분포 | 62 |

| | |
|---|----|
| <표 4- 6> 대분류 업종별 표본미달 세세분류 삭제 비중 | 63 |
| <표 4- 7>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체의 특징 | 66 |
| <표 4- 8>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체의 특징 | 67 |
| <표 4- 9> 대분류 업종별 ‘보정된 추정경비 오차’에 대한 기초통계량 | 72 |

그림목차

| | |
|--|----|
| [그림 2-1] 가구조사 통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수 | 8 |
| [그림 2-2] 국세통계 사업소득 및 특고·프리랜서 | 8 |
| [그림 2-3] 사업자 현황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득 신고 사업장 추세 | 11 |
| [그림 2-4]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사업자 현황 | 11 |
| [그림 2-5] 신규와 폐업 개인사업자 | 12 |
| [그림 2-6]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업체외 사업자 수 | 13 |
| [그림 2-7] 주요 업종 개인사업자 수 | 13 |
| [그림 2-8] 사업체 조사에서 사업체 수 | 15 |
| [그림 2-9] 소매업과 음식업 사업체 수 | 15 |
| | |
| [그림 3-1]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율과 1인당 GDP | 25 |
| [그림 3-2]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의 이행행렬 | 31 |
| [그림 3-3] 연령별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의 이행행렬 (2018→2020년) | 33 |
| | |
| [그림 4-1] 경비율 제도 도식화 | 51 |
| [그림 4-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비교: 2015년 vs 2020년 | 59 |
| [그림 4-3] 표본미달 여부에 따른 매출액 분포 비교 | 64 |
| [그림 4-4] 추정경비가 실제경비에의 근사 여부(비율)에 대한 히스토그램 | 69 |
| [그림 4-5] 세세분류별 ‘차분’에 대한 확률분포: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장 | 70 |
| [그림 4-6] 세세분류별 ‘차분’에 대한 확률분포: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장 | 71 |

요 약

1. 자영업자 현황

자영업자는 취업자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용어로, 가계조사에서 설정한 개념이다. 자영업자는 크게 고용주와 자영자로 나뉜다. 자영업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포괄범위는 소상공인보다 넓다.

국세통계 자료에서는 사업소득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가 종사상 지위의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의 수가 가계조사 통계보다 많다. 또한 가구 조사자료에서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통계에서는 사업장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약 34만 개 증가하였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주류 관련 음식업, 유통 사업체, 여행사, 예식장 등은 감소하였다. 반면, 통신판매업 사업체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커피전문점, 한식 전문점, 실내 스포츠 시설 사업체, 교습소·공부방 사업체가 증가하였다.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의 자영업자 총소득을 비교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이 국민계정에서보다 크며, 두 자료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할 때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및 소득변동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018년)~23차(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자영업자가 원래의 고용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92.0%이다. 이 비율은 상용직 90.8%, 임시일용직 79.9%보다 높다. 자영업자가 무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5.3%로, 상용직 7.3%나 임시일용직 13.1%보다 낮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자영업자가 고용 지위를 유지하는 비중은 89.2%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상용직 90.7%, 임시일용직 77.1%이다. 자영업자가 이 시기에 무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6.1%로, 상용직(6.5%)과 비슷하고, 임시일용직(16.3%)보다 낮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의 고용지위 변동 확률은 상용직에 가깝다. 자영업자의 고용 지위 안정성은 상용직과 비슷하고 임시일용직보다는 높다.

연령 60세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을 계산한 결과, 60세 미만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고용지위 유지 확률이 더 높았다. 고용주와 자영자의 지위를 2년간 유지할 확률이 60세 미만은 각각 61.1%, 72.3%인 데 반해 60세 이상에서는 63.7%와 81.0%로 나타나, 자영업에 머무를 확률이 고령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자영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동 확률은 60세 이상에서 고용주는 10.6%, 자영자는 14.0%로, 60세 미만이 각각 8.4%, 7.6%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계층을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종사상 지위 이동 확률을 계산한 결과, 자영자의 경우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동일 지위를 유지할 확률이 7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 지위에서 벗어나 무직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만, 이러한 노동이동이 대체로 소득 감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자의 노동이동이 양질의 임금 일자리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자영업의 노동이동이 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아닌 더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의 재취업일 가능성이 크고, 자영자로 종사상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라도 소득 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자영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30%가 넘는 60세 이상의 경우 노동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실업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층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동이동을 통해 저소득 지위를 개선하기 힘든 한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들을 빙곤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자영업자 경비율 연구

제4장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제외한 경우의 경비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의 사업상의 실제 경비를 적절하게 추정하는 것이 소득추계제도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표준산업분류의 세세업종 단위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0년도 광업제조업 조사(9인 미만, 10인 이상), 운수업, 서비스업 조사의 공공형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을 하였다. 해당 여기에 포함된 대분류 업종은

총 13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업종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매년 초에 직전 귀속연도에 적용될 경비율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고시 6자릿수 업종분류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기준 세세분류단위(대분류 포함 5자릿수)의 업종분류와의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계표를 이용하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별 고시 경비율이 동 단위의 조사 경비율을 얼마나 근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사업장의 업종과 매출별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의 적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의 표본 자체를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체 표본과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체 표본을 구분하였다.

본고에서 고시 경비율과 조사에 기반한 실제 경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추계소득제도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고시 경비는 실제 경비보다는 높게 설정되는 반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고시 경비는 실제 경비와 유사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정된 경비율 간극이 0에 가까운 비율('근사비율')을 검토하면, 단순경비율의 경우 12.26%인 반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15.35%로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장에서 고시 경비율의 성과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근사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업종에는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은 기준수입금액 전후로 사업장의 비용구조 등 사업장의 특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경비율 제도는 6자리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찾기 어려운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혹자는 실제 경비를 제대로 근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경비율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세

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세가 산출되는 과정의 가장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소득확정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경비율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매출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연도 별 수입금액의 변동성이 큰 업종 혹은 사업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경비율 제도가 갖는 취약사업체 지원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현재의 경비율 제도는 소득을 간단히 추계하는 제도로, 정확한 소득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과 장기적으로는 양립하기 어렵다. 경비율 추계소득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은 최근의 실시간 소득인프라 제도의 개선과 맞물려 사업체의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 방향과 그 궤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인건비(지급명세서 자료), 임대료(실시간 부동산 임대소득자료), 매입비용(부가가치세 자료)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세 사업체의 납세협력비용이 어떠한 지점에서 발생하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단순히 어떤 특정 연도의 사업체의 매출액이 단순히 낮다고 해서 영세 사업체라고 하기보다는, 다년간 자료를 통해서 영세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과 구성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도 많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있다. 정책 판단과 노력을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 상황에 관한 적절한 통계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에 관한 통계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본 연구 제2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업자에 관한 통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조사통계와 행정통계를 비교한다. 조사통계와 행정통계에서 자영업자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서 직접 비교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두 통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관한 통계는 그동안 조사자료에 크게 의존하여 왔는데, 앞으로 행정통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 형태에 기반한 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넓어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려고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서 고용보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실직을 하거나

2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폐업을 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이동 확률을 비교한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에서 자영업자를 포괄하려면, 자영업자 소득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비율 제도를 재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경비율 제도는 소득을 간단히 추계하는 제도로, 정확한 소득 보고 체계와 장기적으로는 양립하기 어렵다. 제4장에서는 현재의 경비율 제도를 개관하면서, 경비율 제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장 자영업자 현황

제1절 서 론

이 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로 자영업과 관련된 통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자영업자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용어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조사에서 설정한 개념이다. 자영업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관한 정의는 법적 근거가 있다. 제2절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의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국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 수에 관한 통계를 비교한다. 각 자료마다 자영업자에 관한 범위가 다소 다르다. 여기서는 일치하는 범위를 최대한 파악하여 통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 비교한 바에 따르면, 행정통계와 조사자료에서 사업체 수, 추세가 다르다. 조사자료에서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행정통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행정통계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어서, 제4절에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통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수와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생활업종 자영업자의 사업자 현황을 살펴본다.

4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제5절에서는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의 자영업자의 소득액을 비교한다.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개념과 범위를 최대한 일치시켜 소득액을 비교하고자 한다.

제2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의

먼저 자영업자의 범위에 관해 살펴본다. 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정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업종마다 매출액의 기준이 400억 원부터 1,500억 원까지 다양하다.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에서는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속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매출액이 600억 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이다.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매출액이 400억 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이다.

소기업 역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매출액이 10억 이하이면 소기업에 속한다.

〈표 2-1〉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 소기업 | 매출액 기준 |
|--------------------------|-----------|
| 제조업 15개, 전기가스수도업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 9개, 광업, 건설업, 농림어업 | 80억 원 이하 |
|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 30억 원 이하 |
|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

자료: 노민선(2022), 「소상공인 지원 현황과 정책방안」, 세미나 발표문.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이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기타 업종)이면 소상공인에 속한다.

기업 회계자료나 가계 조사자료로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회계자료나 가계 조사자료로 알기 어렵다. 상시근로자 수는 행정 집행을 위해 행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보로,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알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2019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소상공인 기업의 수는 644.2만 개로 전체 기업의 93.3%를 차지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34.4만 개로 전체 기업의 5.1%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24.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부동산업(17.9%), 숙박음식업(11.7%), 운수창고업(9.4%), 제조업(7.8%) 순이다.

〈표 2-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범위

|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
| 정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자영자 + 고용주 |
|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없음 |
| 특징 | 사업자 등록 필수 법인 사업자 포함 | 사업자 등록 안한 노점상 등 포함 특수고용종사자 포함 법인 사업자 제외 |

자료: 저자 작성.

자영업자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 ‘자영업자’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용어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고용 관련 가계 조사에서 설정한 개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눈다. 자영업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가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6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경제활동인구조사, 주요용어해설 참조).

자영업자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등도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가구 조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로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관한 정의와는 달리, 자영업자 정의에는 매출이나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이 많고 상시근로자가 많아도 자영업자에 포함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영업자에 포함된다. 법인 사업자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에는 특수고용종사자,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포괄 범위가 소상공인보다 넓다.

제3절 자료별 사업체 수 및 자영업자 통계

이 절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의 사업체 수 통계를 비교한다. 비교하는 자료는 국세통계(국세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노동부)이다. 자료마다 포괄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다르다. 자료의 사업자 범위를 파악하고, 비교할 만한 통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1. 자료별 정의와 포괄범위

여기서는 먼저 가계조사와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의 범위에 관해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나 노동패널과 같은 가계조사 자료에서 자영업자는 고용주, 자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포함한다. 특고 전체가 가계조사에서 자영업자로 응답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계조사 자료에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의 특고가 포함되어 있

〈표 2-3〉 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의 포괄 범위

| 조사자료(경활, 노동패널) | | | 국세통계 |
|----------------|-----|-------------|----------------|
| 자영업자 | 고용주 | 고용주(법인 제외) | 사업소득자 |
| | 자영자 | 사업체 자영자 | |
| | | 특고·프리랜서(일부)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

자료: 저자 작성.

는 것은 분명하다. 2019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약 561만 명, 노동패널 자료에서 약 525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자영업자와 관련된 국세통계 자료에는 개인 단위 통계와 사업장 단위 통계가 있다.

개인 단위와 관련된 통계에는 (1) 사업소득 신고자(3-2-4)와 (2)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4-4-6) 자료가 있다. 사업소득 신고 통계는 종합소득 신고자 가운데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에 관한 통계이다. 이 통계에는 과세 미달자가 제외되어 있다. 2019년 과세 대상이 된 사업소득 신고자는 약 552만 명이다.

국세통계에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고용 형태로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자는 2019년 약 254만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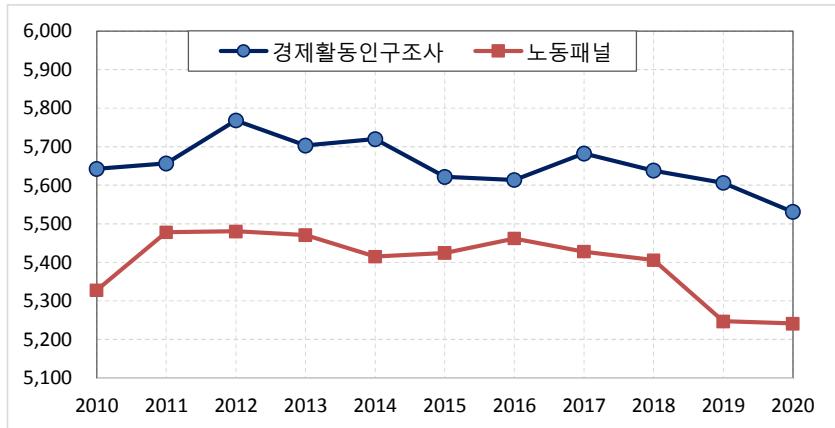
종합하면, 국세통계에서 사업소득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를 합한 것은 조사자료의 자영업자(자영자+고용주)에 상응한다. 이렇게 조사자료와 국세통계 자료에서 자영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두 자료의 자영업자 통계를 비교하였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의 수가 조사통계보다 많다. 2019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약 561만 명, 노동패널 자료에서 약 525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사업소득 신고자는 약 552만 명이고, 특고·프리랜서는 약 254만 명으로 이 둘을 합하면 약 806만 명이다. 사업소득 신고자에는 과세미달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는 최소값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자영업자 수는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것보다 많을 것이다. 행

8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그림 2-1) 가구조사 통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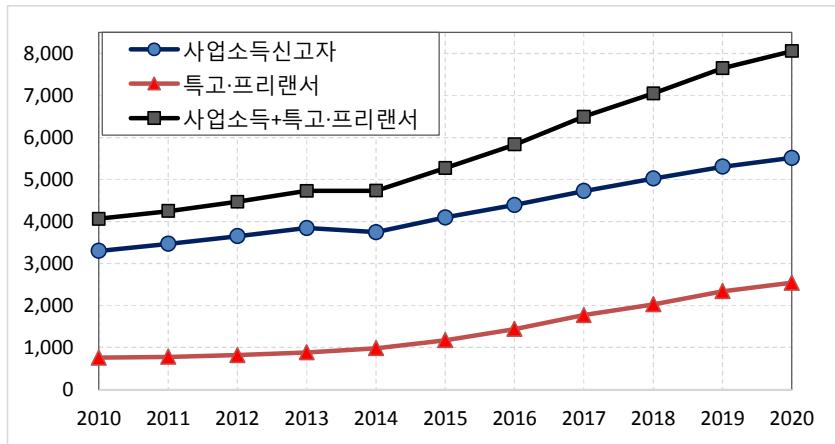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그림 2-2) 국세통계 사업소득 및 특고·프리랜서

(단위: 천 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소득종류별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3-2-4),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신고현황(4-4-6).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중 과세미달자는 제외.

정통계에서 과약한 하한값이 조사자료보다 크다.

둘째, 자영업자의 추세가 다르다. 가구 조사자료에서 자영업자는 감소

하는 추세이다. 2011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2.2% 감소하였고, 노동패널에서는 4.3% 감소하였다. 반면, 국세 통계에서 자영업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11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사업소득 신고자는 59.0% 증가하였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특고 및 프리랜서)는 227.0% 증가하였다. 사업소득 신고자와 특고, 프리랜서를 합한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89.7% 증가하였다.

조세행정의 개선으로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 관련 소득 신고자가 증가 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세행정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최근 몇 년간으로 시기를 한정하더라도, 자영업자 수가 조사자료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국세통계에서는 증가한다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2. 사업체 수 통계 : 국세통계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와 관련된 자료는 개인 단위와 사업장 단위의 형태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는 개인 단위 통계와 사업장 단위 통계를 비교하여 두 통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다. 앞에서 국세통계의 개인 단위 자료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사업장 단위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국세통계에서 ‘사업자 현황’과 ‘사업소득 신고자’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명칭으로 보면 개인에 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장 수에 관한 통계이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이 연구에서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하에 나오는 ‘사업자’는 ‘사업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세통계에서 총 사업자 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수를 합한 것이다. 종사상 지위의 자영업자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에 관한 통계를 파악하고 할 때에는 국세통계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관한 통계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통계 개인사업자에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¹⁾가 있

1) 면세사업자는 면세품목을 다루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품목은 기초생활필수품(미 가공식료품, 연탄 및 무연탄, 수도 등), 국민후행용역(병원, 의원), 교육(허가된 학

10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표 2-4〉 2019년 사업자(가동사업자) : 국세통계

| | | 정의 | 사업자 수 (개) | 부가가치세 신고 (건) |
|-------|-------|------------------|--------------|-----------------|
| 법인사업자 | | 법인 등록 사업자 | 1,002,855 | 900,617 |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4,366,058 | 4,249,286 |
| | 간이사업자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1,632,285 | 1,563,410 |
| | 면세사업자 | | 1,044,926 | |

주: 사업자 수는 기간말 가동사업자 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사업자 현황(9-8-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총괄(9-1-1).

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동 사업자 통계를 보고자 한다. 국세통계의 사업자 현황(9-8-1)에서는 기간말 가동 사업장 수를 보여준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눈다. 2019년에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일반사업자는 436.6만 개이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163.2만 개다.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를 합한 개인 사업장의 개수는 2019년 약 704만 개다.

국세통계에는 사업장 수와 관련하여 두 가지(사업자현황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신고 사업장) 통계가 있다. 2019년 사업소득 신고 사업장 수(신고 건수)는 약 906만 개로, 사업자 현황 자료의 개인사업자 약 756만 개 보다 많다. 사업자 현황 자료는 가동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신고 사업장 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수를 비교할 때에는 가동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세통계에서 사업자 현황 자료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체 현황에서 개인사업자는 2011년 약 518만 개에서 2020년 약 756만 개로 10년 동안 45.9% 증가하였다. [그림 2-3]에서도 국세통계에서는 자영업자의 수와 마찬가지로 사업체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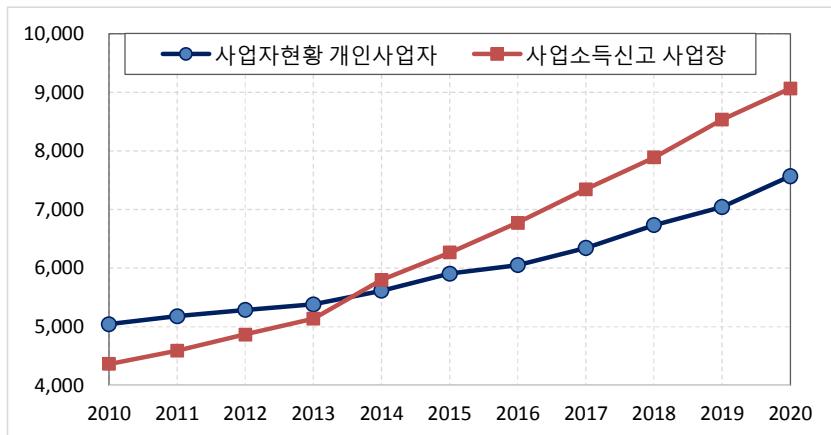
한편, 국세통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자 수도 나와 있다. 부가가치세 신

원), 여객운송, 문화 관련(도서, 신문, 방송, 예술창작 등), 기타(토지) 등이다.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업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출판업, 연예인 등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신고에서는 1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과 지출을 신고한다.

고자 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합한 것보다 약간 적다. 예를 들어, 사업자 현황에서의 일반사업자 수는 약 437만 개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그림 2-3) 사업자 현황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득 신고 사업장 추세

(단위 : 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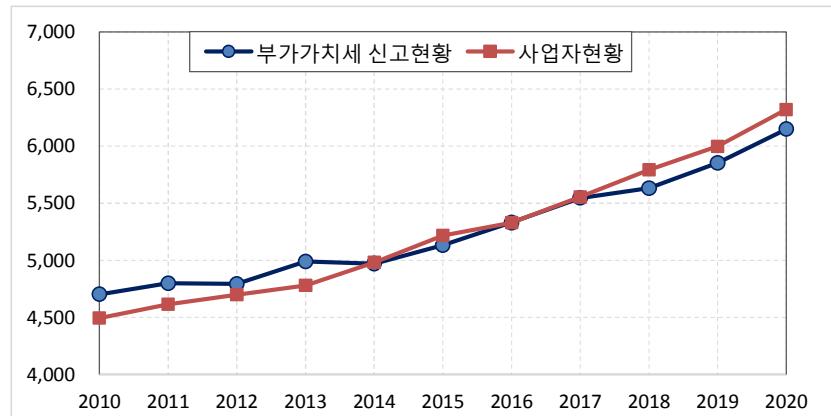


주 :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 사업자임. 사업소득신고 현황은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것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사업자현황(9-8-1), 업태별 · 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3-2-4).

(그림 2-4)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사업자 현황

(단위 : 천 개)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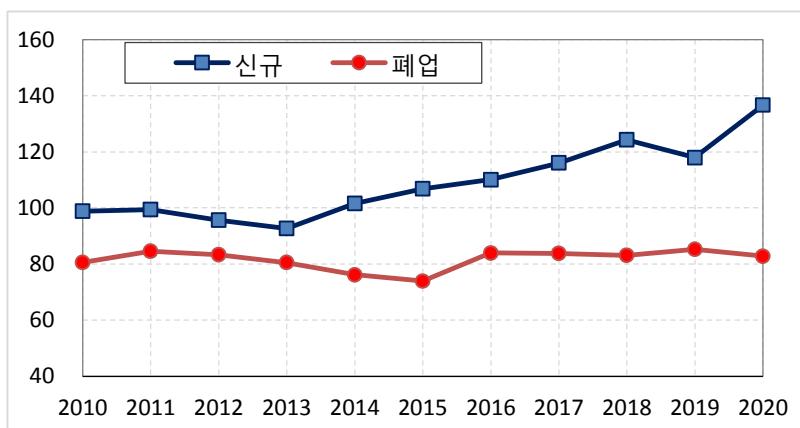
12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건은 425만 건이다.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수가 가동 사업자 수보다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매우 작다. 부가가치세 신고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개인사업자의 증감을 신규와 폐업 사업체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2-5) 신규와 폐업 개인사업자

(단위: 만 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사업자현황(9-8-2).

〈표 2-5〉 주요 업종 신규 및 폐업 개인사업자 수 변화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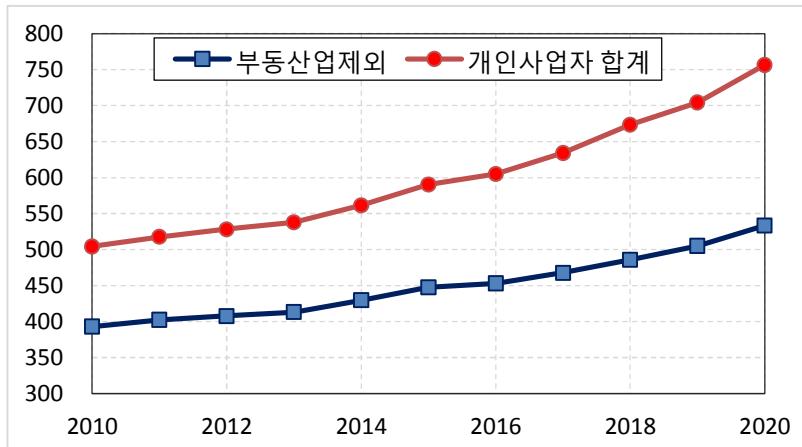
| | 2018~2019 | | 2019~2020 | |
|--------|-----------|--------|-----------|---------|
|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 전체 | -63,987 | 21,688 | 187,298 | -24,740 |
| 부동산업 | -90,793 | +4,173 | +153,808 | +27,982 |
| 소매업 | +24,933 | +9,899 | +56,484 | +624 |
| 음식업 | +2,826 | -395 | -17,993 | -21,669 |
| 전기ガ스수도 | -7,214 | +3552 | -1,219 | +781 |
| 광고기타산업 | -6,175 | 2,465 | +4,694 | +1,002 |

주: 예를 들어, '2018~2019, 신규'는 2019년 신규 사업자 수에서 2018년 신규 사업자 수를 뺀 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9-8-4.

(그림 2-6)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업제외 사업자 수

(단위 : 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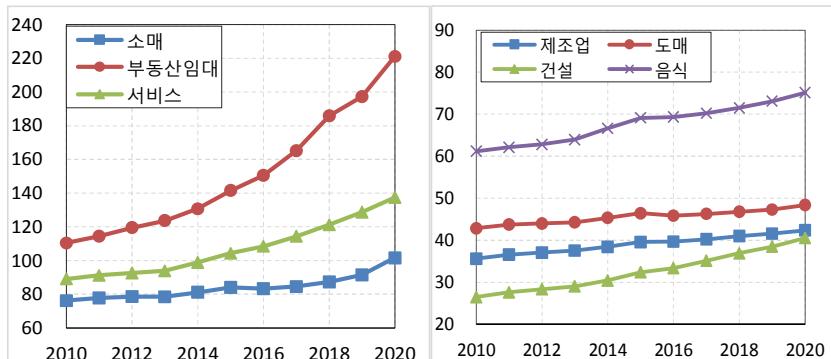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9-8-4.

폐업 사업자는 연 평균 약 90만 개로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신규 사업자는 2014년 113만 개에서 2020년 152만 개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가동 사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사업체 수가 예외적으로 2019년에 추세에서 벗어나 감소하였다. 이유를 알기 위해 업종별로 신규 및 폐업 개인사업체 수 변화를 살펴보았

(그림 2-7) 주요 업종 개인사업자 수

(단위 : 만 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다. 2019년 신규 사업체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은 부동산업이다. 부동산업 신규 사업체 수가 2018년에 비해 2019년 9.1만 개 감소하였다. 나머지 업종에서는 기준 추세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점은 부동산업을 제외한 사업체 수 변화를 보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수는 2015년 이후 일정한 비율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2019년 신규 개인사업체 수 감소는 부동산업에서 신규 사업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에서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부동산업대업 사업체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소매업 사업자 수는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많이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건설업, 음식업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매업과 제조업 사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3. 사업체 수 통계 : 사업체 조사자료와 행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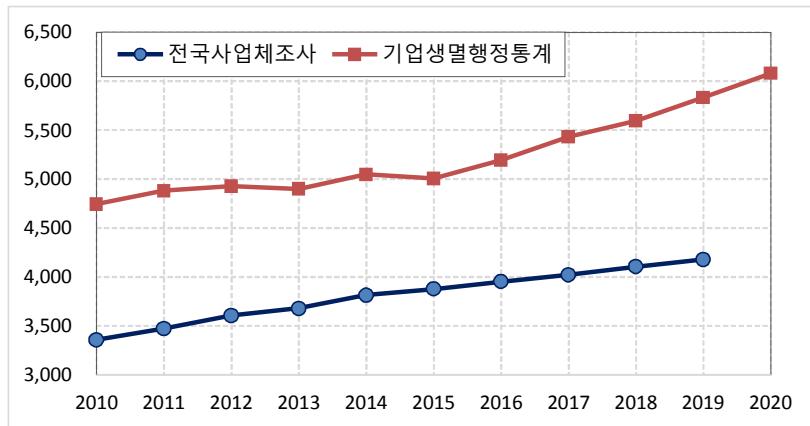
여기서는 사업체 수에 관한 통계청의 통계를 비교한다. 통계청 통계자료 가운데 기업생멸행정통계는 행정자료(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등)에 등록 또는 신고한 전체 기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전국사업체조사는 통계청의 조사통계이다.

사업체 수는 조사통계인 전국사업체조사에서보다 행정자료를 결합한 통계인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수는 차이가 있지만, 두 조사에서 모두 사업체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영세한 사업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생멸행정통계 가운데 영세 사업체가 많다고 알려진 소매업과 음식업 사업체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럼에서 보이듯이, 2015년 이후 소매업과 음식업 사업체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8) 사업체 조사에서 사업체 수

(단위 : 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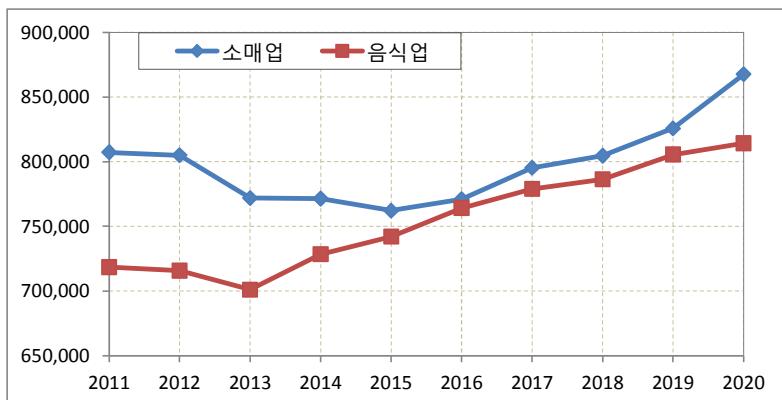


주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는 전체 사업체 수,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는 개인 사업체 수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업생멸행정통계」.

(그림 2-9) 소매업과 음식업 사업체 수

(단위 : 개)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제4절 코로나19의 확산과 생활 사업자 변동

국세청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업종별,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과 2021년 12월 상황을 비교한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2019년 말 약 240만 개, 2020년 말 약 255만 개, 2021년 말 약 274만 개로, 2년 동안 약 34만 개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4.3%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생활 사업자는 증가하였다.

〈표 2-6〉 자료 : 국세청 발표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

(단위 : 개)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 증감 | 증감률 |
|-----------|-----------|-----------|---------|-------|
| 2,397,281 | 2,548,586 | 2,739,012 | 341,731 | 0.143 |

자료: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표 2-7〉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감소 업종(10개)

(단위 : 개)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 업종명 | 증감 | 증감률 |
|-----------|-----------|-----------|-------|--------|--------|
| 32,992 | 29,002 | 26,469 | 호프전문점 | -6,523 | -0.198 |
| 14,413 | 12,219 | 10,811 | 간이주점 | -3,602 | -0.250 |
| 30,291 | 28,758 | 27,713 | 노래방 | -2,578 | -0.085 |
| 21,677 | 20,315 | 19,119 | 구내식당 | -2,558 | -0.118 |
| 20,939 | 20,114 | 19,433 | 여관·모텔 | -1,506 | -0.072 |
| 23,474 | 22,259 | 21,973 | 기타음식점 | -1,501 | -0.064 |
| 29,289 | 28,612 | 28,333 | 슈퍼마켓 | -956 | -0.033 |
| 10,102 | 9,970 | 9,265 | PC방 | -837 | -0.083 |
| 14,185 | 13,438 | 13,604 | 여행사 | -581 | -0.041 |
| 18,111 | 17,867 | 17,654 | 당구장 | -457 | -0.025 |

자료: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표 2-8〉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감소 업종(10개) : 감소율 기준
(단위: 개)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 업종명 | 증감 | 증감률 |
|-----------|-----------|-----------|-------|--------|--------|
| 14,413 | 12,219 | 10,811 | 간이주점 | -3,602 | -0.250 |
| 32,992 | 29,002 | 26,469 | 호프전문점 | -6,523 | -0.198 |
| 890 | 828 | 783 | 예식장 | -107 | -0.120 |
| 21,677 | 20,315 | 19,119 | 구내식당 | -2,558 | -0.118 |
| 30,291 | 28,758 | 27,713 | 노래방 | -2,578 | -0.085 |
| 10,102 | 9,970 | 9,265 | PC방 | -837 | -0.083 |
| 5,495 | 5,274 | 5,058 | 목욕탕 | -437 | -0.080 |
| 20,939 | 20,114 | 19,433 | 여관·모텔 | -1,506 | -0.072 |
| 23,474 | 22,259 | 21,973 | 기타음식점 | -1,501 | -0.064 |
| 6,551 | 6,323 | 6,219 | 신발가게 | -332 | -0.051 |

자료: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100개 업종 가운데 사업자 수가 감소한 업종은 19개이고, 사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81개이다. 2019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사업체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호프 전문점으로, 2년 동안 6,523개가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간이 주점(-3,602개), 노래방(-2,578개), 구내식당(-2,558개), 여관·모텔(-1,506개), 기타음식점(-1,501개) 순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그 밖에 슈퍼마켓, PC방, 여행사, 당구장 등에서도 사업체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많이 감소한 업종은 대체로 대면서비스 업종 가운데 방역 대책의 영향을 받은 곳이다.

2년 동안 감소율이 높은 업종은 간이 주점(-25.0%), 호프 전문점(-19.8%)과 같은 주류 관련 음식점업이다. 예식장(-12.0%), 구내식당(-11.8%)도 많이 감소하였다. 유흥 관련 업종인 노래방(-8.5%), PC방(-8.3%)도 많이 감소하였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생활업종 100개 가운데 81개 업종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하였다. 2년 동안 통신판매업 사업체 수가 174,191개 증가하여, 생활업종 사업체 수 증가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커피전문점(+21,815개), 한식 전문점(+18,710개), 부동산 중개업(+16,525개), 실내장식 가게(+13,688), 교습소·공부방(+11,206), 피부관리업(+10,696개)에서 사업체 수가 각각

18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패스트 푸드점(+7,415개)와 편의점(+6,672)도 많이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통신판매업 사업체 수가 2년 동안 64.2% 증가하였다. 헬스클럽(+30.2%), 실내스크린 골프업(+29.5%), 스포

〈표 2-9〉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증가 업종(10개)

(단위 : 개)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 업종명 | 증감 | 증감률 |
|-----------|-----------|-----------|---------|---------|-------|
| 13,638 | 16,120 | 20,182 | 펜션 | 6,544 | 0.480 |
| 41,786 | 44,858 | 48,458 | 편의점 | 6,672 | 0.160 |
| 38,956 | 42,952 | 46,371 | 패스트푸드점 | 7,415 | 0.190 |
| 37,874 | 42,168 | 48,570 | 피부관리업 | 10,696 | 0.282 |
| 33,880 | 39,424 | 45,086 | 교습소·공부방 | 11,206 | 0.331 |
| 56,837 | 62,591 | 70,525 | 실내장식가게 | 13,688 | 0.241 |
| 125,057 | 132,291 | 141,582 | 부동산중개업 | 16,525 | 0.132 |
| 386,161 | 397,465 | 404,871 | 한식전문점 | 18,710 | 0.048 |
| 61,548 | 71,233 | 83,363 | 커피음료점 | 21,815 | 0.354 |
| 271,383 | 356,776 | 445,574 | 통신판매업 | 174,191 | 0.642 |

자료 :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표 2-10〉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증가 업종(10개) : 증가율 기준

(단위 : 개)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 업종명 | 증감 | 증감률 |
|-----------|-----------|-----------|-----------|---------|-------|
| 56,837 | 62,591 | 70,525 | 실내장식가게 | 13,688 | 0.241 |
| 7,980 | 8,852 | 10,002 | 스포츠시설운영업 | 2,022 | 0.253 |
| 37,874 | 42,168 | 48,570 | 피부관리업 | 10,696 | 0.282 |
| 4,925 | 5,365 | 6,377 | 실내스크린골프점 | 1,452 | 0.295 |
| 7,718 | 8,569 | 10,052 | 헬스클럽 | 2,334 | 0.302 |
| 33,880 | 39,424 | 45,086 | 교습소·공부방 | 11,206 | 0.331 |
| 13,868 | 15,690 | 18,628 | 기술,직업훈련학원 | 4,760 | 0.343 |
| 61,548 | 71,233 | 83,363 | 커피음료점 | 21,815 | 0.354 |
| 13,638 | 16,120 | 20,182 | 펜션,캐스트하우스 | 6,544 | 0.480 |
| 271,383 | 356,776 | 445,574 | 통신판매업 | 174,191 | 0.642 |

자료 :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츠시설 운영업(+25.3%)과 같은 실내 스포츠 시설도 많이 증가하였다.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업에서는 주류 관련 음식업(호프 전문점, 간이 주점, 기타음식점)과 유흥 관련(노래방, PC방, 당구장) 사업체가 감소하고, 대신 커피전문점과 한식 전문점이 증가하였다. 대면서비스 업이 위축되고 대신 통신판매업이 많이 증가하였다. 여행, 야외활동,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여행사, 예식장, 목욕탕, 신발가게 등이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실내 스포츠 시설(헬스클럽, 실내스크린 골프업,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증가하였다. 교육 관련 업종에서는 대규모 학원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교습소·공부방, 기술직업훈련 학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제5절 자영업자 소득 : 총소득

여기서는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총액을 비교하고자 한다.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 소득은 혼합소득과 준법인소득인출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법인 기업이란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회계 보고도 하는 기업(대규모 개인 기업, 일부 정부 기업)을 말한다. 국민계정에서는 준법인 기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사업주가 자기에게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큰 규모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민계정에서는 배당으로 의제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로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 소득은 사업소득(종합소득 신고)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거주자 사업소득)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통계에는 거주자 사업소득 수입액(revenue)에 관한 통계가 있다. 이로부터 소득액을 추정해야 한다. 거주자 사업소득 연말정산 통계를 보면,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수입액에 약 24%를 곱한 값이다. 이 비율을 이용하여 거주자 사업소득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9년 거주자 수입액은 총 105조 원이고, 여기에 24%를 곱한 값인 25.2조 원을 특고와 프리랜서의 소득액으로 추정한다.

20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표 2-11〉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 소득 비교

(단위: 십억 원)

| 연도 | 국세통계 | | | | 국민계정 | | | 비율 |
|------|--------------|-------------------|------------------|-----------------|----------|-------------------|-----------------|---------|
| | 종합소득 사업소득 | 거주자 사업소득 수입 | 추정 소득 | 합 | 혼합 소득 | 준법인 기업 소득인출 | 합 | |
| | (1) | (2) | (3)= (2)×0.24 | (4)= (1)+(3) | (5) | (6) | (7)= (5)+(6) | (7)/(3) |
| 2015 | 102,029 | 67,629 | 16,231 | 118,260 | 64,518 | 53,329 | 117,847 | 0.997 |
| 2016 | 108,260 | 76,849 | 18,444 | 126,704 | 65,888 | 54,207 | 120,095 | 0.948 |
| 2017 | 116,424 | 85,783 | 20,588 | 137,012 | 67,010 | 54,951 | 121,961 | 0.890 |
| 2018 | 121,032 | 94,124 | 22,590 | 143,622 | 66,646 | 50,862 | 117,508 | 0.818 |
| 2019 | 126,732 | 105,026 | 25,206 | 151,938 | 62,661 | 46,708 | 109,369 | 0.720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9년 종합소득 신고액 중 사업소득액은 약 127조 원이고, 특고·프리랜서의 추정 소득액은 총 25.2조 원이다. 이 둘을 합하면 약 152조 원이다.

국민계정에서 2019년 혼합소득은 약 62.7조 원이고, 준법인기업 소득인출액은 총 46.7조 원이다. 국민계정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은 총 109.4조 원이다.

2019년 국민계정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이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액의 72.0%에 해당한다.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 대비 국민계정 파악 소득의 비율을 2015년 99.7%였고, 2019년에는 72.0%까지 차이가 커지는 추세이다.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개념과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자료의 차이가 크기도 하고, 격차가 더 커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종합소득 사업소득액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 중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것임을 감안하면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액은 하한값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계정에서 혼합소득 혹은 자영업자 소득을 계산할 때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업소득 과세 미달자의 사업소득까지 포함하려면 가계자료(예: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세통계를 결합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요약 및 결론

자영업자는 취업자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용어로, 가계조사에서 설정한 개념이다. 자영업자는 크게 고용주와 자영자로 나뉜다. 자영업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포괄범위는 소상공인보다 넓다.

국세통계 자료에서 사업소득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가 종사상 지위의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의 수가 가계조사 통계보다 많다. 또한 가구 조사자료에서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통계에서는 사업장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약 34만 개 증가하였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주류 관련 음식점, 유통 사업체, 여행사, 예식장 등은 감소하였다. 반면, 통신판매업 사업체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커피전문점, 한식 전문점, 실내 스포츠 시설 사업체, 교습소·공부방 사업체가 증가하였다.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의 자영업자 총소득을 비교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이 국민계정보다 크며,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할 때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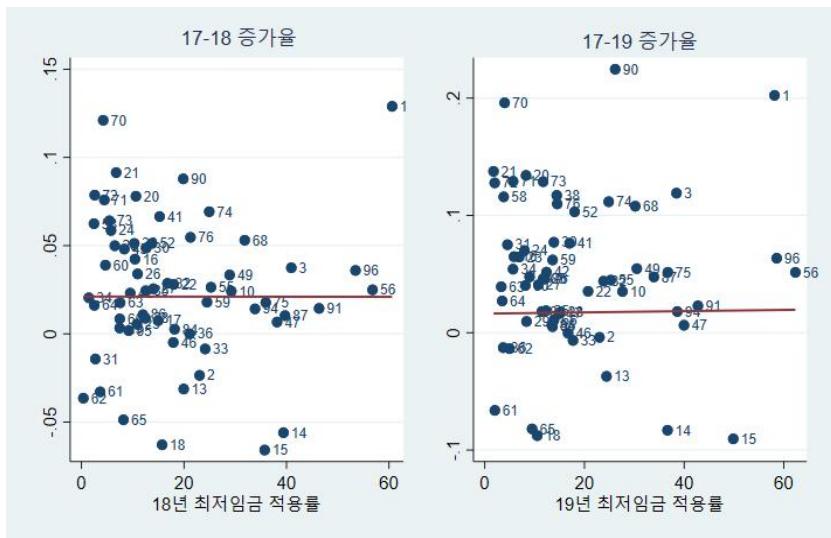
[보론] 최저임금과 사업체 수의 관계

여기서는 최저임금과 사업체 수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충분류 산업별 최저임금 적용률과 사업체 수 증가율을 비교한다. 최저임금 적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고, 사업체 수 증가율은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부도 2-1] 왼쪽 그림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률과 2017~2018년 사이 사업체 수 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두 변수를 회귀 분석한 경우 회귀계수는 -0.00002 이다. 2017~2018년 산업별 사업체 수 증가율은 최저임금 적용률과 상관관계가 없다.

최저임금이 2018년과 2019년 많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2년간 사업체 증가율과 2019년 최저임금 적용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업체 수 증가율을 최저임금 적용률에 회귀 분석한 회귀계수는 $+0.00003$ 이다. 2017년 이후 사업체 수 변동과 최저임금은 상관관계가 없다.

(부도 2-1) 최저임금 적용률과 사업체 수 증가율의 관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부표 2-1〉 회귀분석 : 사업체 수 증가율을 최저임금 적용률에 회귀

| 종속변수 | 계수 | 표준오차 | 관측치 |
|-------------------|-----------|----------|-----|
| 2017~18 사업체 수 증가율 | - .000017 | .0001701 | 63 |
| 2017~19 사업체 수 증가율 | .000032 | .0001352 | 63 |

제 3 장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및 소득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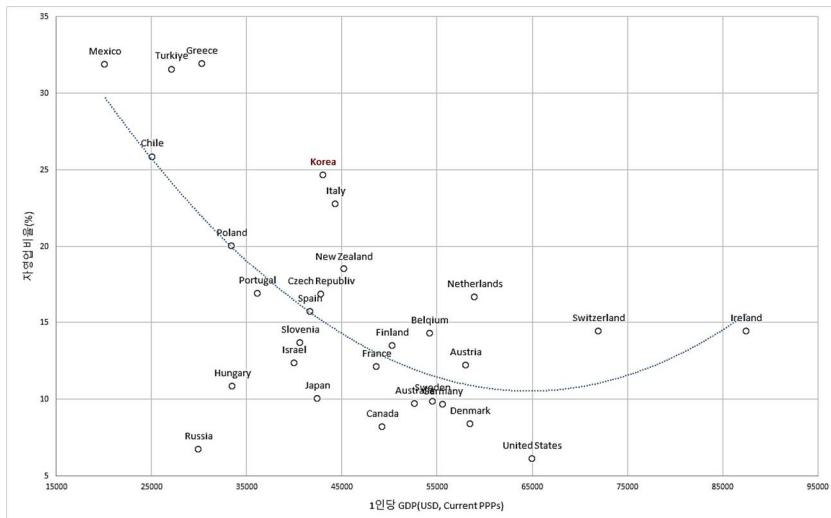
제1절 들어가며

최근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그림 3-1 참조).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주로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며, 이는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낮은 생산성과 자영업자의 고령화 문제 등과 결합하여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창업과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 부채문제 악화 등을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의 영세성과 높은 폐업률이 부각되면서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경기침체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 부문의 경제적 타격이 커짐에 따라, 손실 보상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등 정부 정책이 확대되고 사회적으로도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영업에 대한 우려와 정책적 관심에 비해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자영업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자영업의 규모, 창업률과 폐업률에 관한 통계 분석,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과 폐업 결정요인 분석 등 자영업 진·퇴출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변동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자영업에서 이탈한 경우 어떤 직업적 선택을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가구소득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등 전반적인 자영업의 동태적 모습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히기 위하여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영업자의 노동이동과 소득이동 등 동태적인 변화를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1)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율과 1인당 GDP



자료:OECD Statistics. 2019.

제2절 분석자료 및 표본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및 소득변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노동시장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

23차자료(2018~2020년)를 분석한다. 패널조사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몇 년에 걸쳐 추적하는 조사로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이력과 가구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동학을 보여주는 데에 유용한 자료이다.

먼저,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간 이행확률을 분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종사상지위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무직(미취업자)의 다섯 개로 구분하였으며, 자영업자를 다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세분화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제3절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자영업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내수 경기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 휴폐업 증가로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비중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상용직근로자 | 29.6 | 30.3 | 30.3 | 31.5 | 30.4 | 31.1 |
| 임시일용직근로자 | 10.6 | 10.4 | 11.0 | 10.8 | 11.0 | 11.5 |
| 자영업자 | 12.0 | 12.2 | 11.9 | 11.7 | 11.2 | 10.8 |
| 고용주 | 3.7 | 3.9 | 3.9 | 3.6 | 3.3 | 3.0 |
| 자영자 | 8.2 | 8.2 | 7.8 | 8.0 | 7.9 | 7.7 |
| 무급가족종사자 | 2.4 | 2.6 | 2.6 | 2.5 | 2.4 | 2.3 |
| 미취업자 | 45.6 | 44.6 | 44.3 | 43.5 | 44.9 | 44.4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2〉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비중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상용직근로자 | 54.3 | 54.5 | 54.4 | 55.8 | 55.2 | 55.9 |
| 임시일용직근로자 | 19.4 | 18.8 | 19.7 | 19.1 | 20.0 | 20.6 |
| 자영업자 | 22.0 | 22.1 | 21.3 | 20.7 | 20.4 | 19.4 |
| 고용주 | 6.9 | 7.1 | 7.1 | 6.4 | 6.0 | 5.4 |
| 자영자 | 15.0 | 14.8 | 14.0 | 14.2 | 14.4 | 13.9 |
| 무급가족종사자 | 4.4 | 4.7 | 4.7 | 4.5 | 4.4 | 4.1 |
| 취업자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1〉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미취업자의 비중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임금근로자가 42.6%(상용직 31.1%, 임시일용직 11.5%), 자영업자 10.8%, 무급가족종사자 2.3%로 나타났다. 취업자 가운데 종사상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0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가 5.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가 13.9%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표 3-5〉는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의 이행행렬을 1년, 2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8년과 2019년 사이 자영업자에서 타 종사상지위로 이동하는 확률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92.0%는 자영업에 머물렀으며, 0.1%는 무급가족종사자로, 5.3%는 무직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사이 종사상지위 간 이동확률을 보면, 자영업자에서 타 종사상지위로 이동한 확률은 4.5%로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을 유지한 확률은 89.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무직으로 이동한 확률은 각각 0.3%와 6.1%로 증가하였다.

〈표 3-6〉~〈표 3-8〉은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로 구분하여 2018~2020년 사이 종사상지위 이동확률을 1년, 2년 단위로 제시한 것이다. 2018년 고용주에서 2019년

28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표 3-3〉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8→2019년)

| t+1(2019년) t(2018년)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상용직 | 90.81 | 1.25 | 0.58 | 0.02 | 7.34 | 100.0 |
| 임시일용직 | 5.44 | 79.89 | 1.41 | 0.15 | 13.11 | 100.0 |
| 자영업자 | 1.46 | 1.12 | 91.97 | 0.13 | 5.32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0.39 | 1.60 | 2.40 | 92.34 | 3.27 | 100.0 |
| 무직 | 4.20 | 4.02 | 0.66 | 0.12 | 91.00 | 100.0 |
| 전체 | 31.65 | 11.47 | 12.74 | 2.70 | 41.44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4〉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9→2020년)

| t+1(2020년) t(2019년)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상용직 | 90.66 | 1.46 | 1.27 | 0.09 | 6.51 | 100.0 |
| 임시일용직 | 4.98 | 77.13 | 1.40 | 0.18 | 16.31 | 100.0 |
| 자영업자 | 2.73 | 1.80 | 89.16 | 0.27 | 6.05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2.67 | 0.94 | 0.64 | 88.41 | 7.35 | 100.0 |
| 무직 | 5.30 | 4.97 | 1.00 | 0.09 | 88.64 | 100.0 |
| 전체 | 31.64 | 11.70 | 12.46 | 2.55 | 41.66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5〉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8→2020년)

| t+1(2020년) t(2018년)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상용직 | 85.86 | 3.41 | 1.55 | 0.15 | 9.02 | 100.0 |
| 임시일용직 | 9.13 | 67.60 | 2.43 | 0.28 | 20.56 | 100.0 |
| 자영업자 | 4.67 | 2.29 | 83.12 | 0.20 | 9.73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3.03 | 2.09 | 2.14 | 83.01 | 9.73 | 100.0 |
| 무직 | 6.92 | 5.69 | 1.41 | 0.19 | 85.79 | 100.0 |
| 전체 | 31.93 | 11.56 | 12.56 | 2.61 | 41.35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6〉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8→2019년)

|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t+1(2019년) | t(2018년) | | | 고용주 | 자영자 | | | |
| 상용직 | | 90.81 | 1.25 | 0.26 | 0.32 | 0.02 | 7.34 | 100.0 |
| 임시일용직 | | 5.44 | 79.89 | 0.34 | 1.07 | 0.15 | 13.11 | 100.0 |
| 자영 업자 | 고용주 | 1.10 | 0.65 | 75.38 | 17.68 | 0.00 | 5.19 | 100.0 |
| | 자영자 | 1.63 | 1.33 | 6.12 | 85.29 | 0.19 | 5.43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 0.39 | 1.60 | 0.65 | 1.76 | 92.34 | 3.27 | 100.0 |
| 무직 | | 4.20 | 4.02 | 0.20 | 0.46 | 0.12 | 91.00 | 100.0 |
| 전체 | | 31.68 | 11.48 | 3.74 | 8.92 | 2.70 | 41.48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7〉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9→2020년)

|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t+1(2020년) | t(2019년) | | | 고용주 | 자영자 | | | |
| 상용직 | | 90.66 | 1.46 | 0.56 | 0.71 | 0.09 | 6.51 | 100.0 |
| 임시일용직 | | 4.98 | 77.19 | 0.12 | 1.20 | 0.18 | 16.33 | 100.0 |
| 자영 업자 | 고용주 | 3.76 | 0.71 | 71.31 | 17.96 | 0.57 | 5.69 | 100.0 |
| | 자영자 | 2.31 | 2.26 | 5.14 | 83.91 | 0.15 | 6.23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 2.67 | 0.94 | 0.49 | 0.15 | 88.41 | 7.35 | 100.0 |
| 무직 | | 5.30 | 4.97 | 0.24 | 0.74 | 0.09 | 88.66 | 100.0 |
| 전체 | | 31.66 | 11.70 | 3.46 | 8.94 | 2.55 | 41.68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8〉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8→2020년)

|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t+1(2020년) | t(2018년) | | | 고용주 | 자영자 | | | |
| 상용직 | | 85.86 | 3.41 | 0.46 | 1.09 | 0.15 | 9.02 | 100.0 |
| 임시일용직 | | 9.14 | 67.66 | 0.32 | 2.02 | 0.28 | 20.58 | 100.0 |
| 자영 업자 | 고용주 | 4.41 | 1.41 | 61.61 | 23.71 | 0.01 | 8.85 | 100.0 |
| | 자영자 | 4.57 | 2.69 | 6.46 | 75.82 | 0.28 | 10.19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 3.03 | 2.09 | 1.11 | 1.04 | 83.01 | 9.73 | 100.0 |
| 무직 | | 6.92 | 5.69 | 0.35 | 1.04 | 0.19 | 85.81 | 100.0 |
| 전체 | | 31.95 | 11.57 | 3.41 | 9.06 | 2.61 | 41.40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에도 고용주를 지속할 확률은 75.4%이며, 자영자의 지위를 지속할 확률은 85.3%로 나타났다. 2018년 고용주였던 취업자 중 17.7%는 2019년 자영자로 이동하였으며, 자영자의 6.1%는 고용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자영업자 내에서의 지위 이동을 제외하면, 자영자가 고용주에 비해 타 종사상지위로의 이동이 더욱 빈번함을 볼 수 있다.

2019~2020년 간 자영업자의 종사상지위 이동확률을 보면, 고용주로 머무를 확률은 71.3%, 자영자는 83.9%로 2018~2019년에 비해 자영업을 유지할 확률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동확률이 고용주는 4.5%, 자영자는 4.6%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동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의 2년 동안의 종사상지위 이동확률을 보면, 자영업에 그대로 머무를 확률은 83.1%로 상용근로자(85.9%), 무급가족종사자(83.0%), 미취업자(85.8%)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동은 7.0%(상용근로자로의 이동 4.7%, 임시일용근로자로의 이동 2.3%)로, 상용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한 확률이 1.5%인 것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종사상지위 가운데 2년간의 이동확률이 가장 높은데, 2018년에 임시일용근로자에서 2020년에도 동 지위를 유지할 확률은 67.6%에 불과하며, 20.6%는 미취업자로, 9.1%는 상용근로자로, 2.4%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미취업자인 경우 2020년에도 미취업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을 확률은 85.8%인데, 나머지는 임금근로자(12.6%), 자영업자(1.4%), 무급가족종사자(0.2%)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는 <표 3-3>~<표 3-8>에서 분석된 2018~2020년 종사상지위 간 이동확률을 이용하여, 종사상지위별로 일자리 변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그래프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고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4.8%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이 자영업 부문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들의 노동시장 퇴장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표 3-12〉 소득계층별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 : 중간소득(2018→2020년)

| t+1(2020년) t(2018년)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
| 상용직 | 83.91 | 3.37 | 0.38 | 1.37 | 0.21 | 10.77 | 100.0 | |
| 임시일용직 | 8.68 | 72.32 | 0.07 | 2.8 | 0.22 | 15.91 | 100.0 | |
| 자영 업자 | 고용주 | 2.92 | 1.02 | 52.91 | 33.39 | 0.03 | 9.73 | 100.0 |
| | 자영자 | 5.14 | 2.52 | 6.17 | 78.54 | 0.24 | 7.39 | 100.0 |
| 전체 | 55.5 | 15.93 | 3.49 | 13.66 | 0.21 | 11.21 | 100.0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13〉 소득계층별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 : 고소득(2018→2020년)

| t+1(2020년) t(2018년)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
| 상용직 | 94.23 | 1.36 | 0.68 | 0.36 | 0.09 | 3.28 | 100.0 | |
| 임시일용직 | 8.6 | 87.85 | 2.06 | 0.04 | 0.00 | 1.45 | 100.0 | |
| 자영 업자 | 고용주 | 5.33 | 1.15 | 70.1 | 17.46 | 0.00 | 5.95 | 100.0 |
| | 자영자 | 7.56 | 0.31 | 11.35 | 77.69 | 0.69 | 2.41 | 100.0 |
| 전체 | 64.62 | 3.52 | 13.57 | 14.59 | 0.16 | 3.53 | 100.0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이 32.7%로 매우 낮으며, 2018년 고용주에서 2020년 무직(37.6%)과 자영자(20.37%)로의 이동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중간소득 계층의 경우, 고용주 지위를 유지할 확률이 52.9%로 저소득 집단에 비해 높고, 2018~2020년 사이 종사상지위가 전환된 경우 대체로 자영자(33.4%) 또는 무직(9.7%)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집단에서는 고용주 지위를 유지할 확률이 70.1%로 같은 기간 자영자로 지속할 확률(77.7%)과 큰 차이가 없으며, 종사상지위가 전환된 경우도 대체로 자영자(17%)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36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표 3-14>와 <표 3-15>는 이상에서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위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5~2017년의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의 이행행렬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 2018~2020년에 비해 이동성이 적게 나타난 반면, 자영자의 경우 2015~2017년 시기에 동일한 종사상지위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2018~2020년 시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의 장기(5년) 이행행렬을 분석하였다. <표 3-16>은 2015년 종사상지위의 5년 뒤 변화 확률을 나타내고 있

<표 3-14>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5→2016년)

| t+1(2016년) t(2015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 상용직 | | 91.17 | 1.63 | 0.25 | 0.93 | 0.08 | 5.94 | 100.0 |
| 임시일용직 | | 6.27 | 79.54 | 0.01 | 2.06 | 0.18 | 11.94 | 100.0 |
| 자영 업자 | 고용주 | 0.42 | 0.39 | 77.53 | 17.38 | 0.45 | 3.83 | 100.0 |
| | 자영자 | 1.50 | 1.79 | 7.95 | 84.50 | 0.03 | 4.23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 0.33 | 1.33 | 3.01 | 0.78 | 90.63 | 3.91 | 100.0 |
| 무직 | | 4.80 | 3.69 | 0.34 | 0.67 | 0.83 | 89.68 | 100.0 |
| 전체 | | 30.49 | 10.90 | 4.15 | 9.23 | 2.87 | 42.37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15>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5→2017년)

| t+1(2017년) t(2015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 상용직 | | 85.64 | 3.89 | 0.64 | 1.90 | 0.25 | 7.68 | 100.0 |
| 임시일용직 | | 11.83 | 69.46 | 0.07 | 1.77 | 0.27 | 16.61 | 100.0 |
| 자영 업자 | 고용주 | 2.25 | 1.66 | 72.56 | 16.11 | 1.59 | 5.83 | 100.0 |
| | 자영자 | 2.59 | 3.84 | 7.97 | 76.90 | 0.39 | 8.31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 2.58 | 3.51 | 4.18 | 2.43 | 83.31 | 4.00 | 100.0 |
| 무직 | | 7.39 | 5.81 | 0.79 | 0.98 | 1.06 | 83.98 | 100.0 |
| 전체 | | 30.91 | 11.76 | 4.33 | 8.90 | 2.90 | 41.19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는데, 2015년에 고용주였던 사람이 이후 5년 동안 임금근로자로 이행하는 확률은 약 10.9%, 무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12.3%이며, 자영자로의 이동은 27.9%로 나타났다. 자영자의 경우 5년 뒤인 2020년에 임금근로자일 확률이 12.3%,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18.8%로 나타났으며, 고용주로 전환될 확률은 6.6%로 나타났다.

〈표 3-16〉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2015→2020년)

| t+1(2020년) t(2015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전체 |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 상용직 | | 74.83 | 7.02 | 1.87 | 3.06 | 0.25 | 12.97 | 100.0 |
| 임시일용직 | | 18.06 | 48.58 | 0.60 | 3.24 | 0.23 | 29.29 | 100.0 |
| 자영 업자 | 고용주 | 7.70 | 3.24 | 46.49 | 27.91 | 2.35 | 12.31 | 100.0 |
| | 자영자 | 5.92 | 6.33 | 6.59 | 61.61 | 0.75 | 18.80 | 100.0 |
| 무급가족종사자 | | 4.65 | 5.56 | 2.56 | 3.26 | 65.83 | 18.14 | 100.0 |
| 무직 | | 13.35 | 8.11 | 0.61 | 1.90 | 1.31 | 74.72 | 100.0 |
| 전체 | | 31.45 | 11.81 | 3.56 | 9.22 | 2.66 | 41.30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제4절 노동이동에 따른 소득변동 분석

본 절에서는 종사상지위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소득 정보는 ‘월평균 소득’과 ‘작년 한해 가구소득’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5년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세금 공제 후 월평균 임금²⁾을,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으로 정의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총수입에서 영업비용, 세금, 제반 활동비 등 총비용을 제외한 순수

2)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세금 공제 후 월평균 임금은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요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노조회비와 사내동호회비 등 기타 공제 금액은 포함한다.

입을 의미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소득은 ‘작년 한해’의 가구소득(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3-17 참조). 본 연구에서는 6개 항목을 합산하여 총 가구소득을 계산한 뒤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17〉 한국노동패널조사 가구소득 항목

| | 내 용 |
|-------|---|
| 근로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봉급,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 |
|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 |
|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을 포함 |
| 사회보험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수급액을 포함 |
| 이전소득 |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는 보조금(현물 포함)을 포함 |
| 기타소득 |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분실물 찾았을 때 받은 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폐품매각대금 등과 같이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표 3-18〉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종사상지위 변동에 따른 월평균 소득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에 고용주에서 2019년에도 고용주로 머물러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2018년 522만 원에서 2019년 537만 원으로 증가(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과 2019년 사이 고용주에서 자영자로 이동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 자영자였다가 2019년에도 계속 자영자에 머무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5.2%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에 자영자에서 2019년 고용주로 종사상지위가 변동된 경우, 월평균 소득이 1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9〉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종사상지위 변동이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이 시

〈표 3-18〉 종사상지위 변동(2018~2019년)에 따른 소득 변화(월평균 소득)

| | | 2018년 소득(만 원) | | | | | |
|------------------------|-----|--------------------------|-----------|------|-------|-------------|-----|
| t+1(2019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287 | 296 | 375 | 242 | 191 | 220 |
| 임시일용직 | | 154 | 154 | 179 | 136 | 25 | 112 |
| 자영업자 | 고용주 | 488 | 137 | 522 | 407 | - | 430 |
| | 자영자 | 203 | 115 | 326 | 229 | 225 | 198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 |
| 무직 | | - | - | - | - | - | - |
| | | 2019년 소득(만 원) | | | | | |
| t+1(2019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298 | 272 | 502 | 209 | - | - |
| 임시일용직 | | 189 | 160 | 213 | 205 | - | - |
| 자영업자 | 고용주 | 461 | 157 | 537 | 358 | - | - |
| | 자영자 | 319 | 144 | 386 | 217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153 | 182 | 578 | 154 | - | - |
| 무직 | | 200 | 121 | 220 | 126 | - | - |
| | | 2018~2019년 월평균 소득 변화율(%) | | | | | |
| t+1(2019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3.8 | -8.1 | 33.9 | -13.6 | - | - |
| 임시일용직 | | 22.7 | 3.9 | 19.0 | 50.7 | - | - |
| 자영업자 | 고용주 | -5.5 | 14.6 | 2.9 | -12.0 | - | - |
| | 자영자 | 57.1 | 25.2 | 18.4 | -5.2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 |
| 무직 | | - | - | - | - | - |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40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표 3-19〉 종사상지위 변동(2019~2020년)에 따른 소득 변화(월평균 소득)

| | | 2019년 소득(만 원) | | | | | |
|--------------------------|------|---------------|-----------|-------|-------|-------------|-----|
| t+1(2020년) t(2019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자영업자 | 고용주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295 | 184 | | 241 | 205 | 344 | 212 |
| 임시일용직 | 155 | 166 | | 180 | 176 | 81 | 115 |
| 자영업자 | 고용주 | 1080 | 304 | 524 | 351 | 387 | 375 |
| | 자영자 | 246 | 161 | 363 | 231 | 161 | 96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 |
| 무직 | - | - | | - | - | - | - |
| 2020년 소득(만 원) | | | | | | | |
| t+1(2020년) t(2019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자영업자 | 고용주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303 | 159 | | 307 | 157 | - | - |
| 임시일용직 | 197 | 162 | | 143 | 452 | - | - |
| 자영업자 | 고용주 | 900 | 196 | 562 | 291 | - | - |
| | 자영자 | 189 | 160 | 382 | 223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173 | 184 | | 664 | 284 | - | - |
| 무직 | 236 | 122 | | 425 | 157 | - | - |
|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변화율(%) | | | | | | | |
| t+1(2020년) t(2019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자영업자 | 고용주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2.7 | -13.6 | | 27.4 | -23.4 | - | - |
| 임시일용직 | 27.1 | -2.4 | | -20.6 | 156.8 | - | - |
| 자영업자 | 고용주 | -16.7 | -35.5 | 7.3 | -17.1 | - | - |
| | 자영자 | -23.2 | -0.6 | 5.2 | -3.5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 |
| 무직 | - | - | | - | - | - |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20〉 종사상지위 변동(2018~2020년)에 따른 소득 변화(월평균 소득)

| | | 2018년 소득(만 원) | | | | | |
|------------------------|------|--------------------------|-----------|------|-------|-------------|-----|
| t+1(2020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자영업자 | 고용주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293 | 213 | | 399 | 218 | 238 | 213 |
| 임시일용직 | 143 | 159 | | 149 | 179 | 102 | 110 |
| 자영업자 | 고용주 | 580 | 244 | 546 | 355 | 287 | 353 |
| | 자영자 | 289 | 161 | 324 | 239 | 296 | 128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 |
| 무직 | - | - | | - | - | - | - |
| | | 2020년 소득(만 원) | | | | | |
| t+1(2020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자영업자 | 고용주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308 | 177 | | 455 | 223 | - | - |
| 임시일용직 | 203 | 162 | | 242 | 376 | - | - |
| 자영업자 | 고용주 | 809 | 212 | 601 | 303 | - | - |
| | 자영자 | 247 | 149 | 346 | 219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158 | 184 | | 518 | 96 | - | - |
| 무직 | 231 | 114 | | 334 | 97 | - | - |
| | | 2018~2020년 월평균 소득 변화율(%) | | | | | |
| t+1(2020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자영업자 | 고용주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5.1 | -16.9 | | 14.0 | 2.3 | - | - |
| 임시일용직 | 42.0 | 1.9 | | 62.4 | 110.1 | - | - |
| 자영업자 | 고용주 | 39.5 | -13.1 | 10.1 | -14.6 | - | - |
| | 자영자 | -14.5 | -7.5 | 6.8 | -8.4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 |
| 무직 | - | - | | - | - | - |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42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표 3-21〉 종사상지위 변동(2018~2019년)에 따른 소득 변화(작년 한 해
균등화 가구소득)

| | | 2018년 소득(만 원) | | | | | |
|--------------------------|-----|---------------|-----------|--------|-------|-------------|-------|
| t+1(2019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6,631 | 7,331 | 12,148 | 5,653 | 5,687 | 6,333 |
| 임시일용직 | | 5,127 | 4,684 | 4,953 | 3,168 | 4,627 | 4,148 |
| 자영업자 | 고용주 | 5,789 | 2,817 | 9,097 | 7,438 | - | 7,326 |
| | 자영자 | 6,241 | 3,391 | 8,076 | 5,431 | 3,595 | 4,178 |
| 무급가족종사자 | | 4,769 | 4,722 | 5,811 | 6,126 | 6,243 | 5,091 |
| 무직 | | 5,617 | 4,985 | 5,731 | 5,292 | 2,889 | 5,006 |
| 2019년 소득(만 원) | | | | | | | |
| t+1(2019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6,985 | 6,147 | 9,549 | 5,197 | 6,295 | 7,017 |
| 임시일용직 | | 6,040 | 5,089 | 3,701 | 3,427 | 4,475 | 4,351 |
| 자영업자 | 고용주 | 4,934 | 2,846 | 9,741 | 7,522 | - | 6,857 |
| | 자영자 | 4,019 | 3,705 | 7,616 | 5,179 | 4,324 | 3,727 |
| 무급가족종사자 | | 5,426 | 3,008 | 9,932 | 5,655 | 6,033 | 3,794 |
| 무직 | | 5,330 | 4,600 | 3,993 | 4,561 | 3,576 | 4,718 |
| 2018~2019년 월평균 소득 변화율(%) | | | | | | | |
| t+1(2019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5.3 | -16.2 | -21.4 | -8.1 | 10.7 | 10.8 |
| 임시일용직 | | 17.8 | 8.6 | -25.3 | 8.2 | -3.3 | 4.9 |
| 자영업자 | 고용주 | -14.8 | 1.0 | 7.1 | 1.1 | - | -6.4 |
| | 자영자 | -35.6 | 9.3 | -5.7 | -4.6 | 20.3 | -10.8 |
| 무급가족종사자 | | 13.8 | -36.3 | 70.9 | -7.7 | -3.4 | -25.5 |
| 무직 | | -5.1 | -7.7 | -30.3 | -13.8 | 23.8 | -5.8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3-22〉 종사상지위 변동(2019~2020년)에 따른 소득 변화(작년 한 해
균등화 가구소득)

| | | 2019년 소득(만 원) | | | | | |
|------------------------|-------|--------------------------|-----------|---------|-------|-------------|-------|
| t+1(2020년) t(2019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6,887 | 3,952 | | 5,561 | 5,498 | 6,403 | 5,996 |
| 임시일용직 | 5,618 | 4,915 | | 6,841 | 4,946 | 5,659 | 4,606 |
| 자영업자 | 고용주 | 11,465 | 1,982 | 9,508 | 7,286 | 9,730 | 7,000 |
| | 자영자 | 4,755 | 3,585 | 7,439 | 5,441 | 5,735 | 3,382 |
| 무급가족종사자 | 5,382 | 2,408 | | 1,144 | 4,398 | 6,282 | 3,055 |
| 무직 | 6,142 | 4,411 | | 7,505 | 6,528 | 5,212 | 4,824 |
| | | 2020년 소득(만 원) | | | | | |
| t+1(2020년) t(2019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8,092 | 4,461 | | 6,030 | 5,539 | 7,126 | 6,739 |
| 임시일용직 | 6,014 | 4,927 | | 7,944 | 5,514 | 9,057 | 5,148 |
| 자영업자 | 고용주 | 11,179 | 1,974 | 9,476 | 6,054 | 7,784 | 8,254 |
| | 자영자 | 3,761 | 2,889 | 8,451 | 5,467 | 10,898 | 2,979 |
| 무급가족종사자 | 5,598 | 2,238 | | 15,784 | 3,955 | 6,164 | 4,067 |
| 무직 | 5,403 | 4,027 | | 7,302 | 5,146 | 4,240 | 5,703 |
| | |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변화율(%) | | | | | |
| t+1(2020년) t(2019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17.5 | 12.9 | | 8.4 | 0.7 | 11.3 | 12.4 |
| 임시일용직 | 7.0 | 0.2 | | 16.1 | 11.5 | 60.0 | 11.8 |
| 자영업자 | 고용주 | -2.5 | -0.4 | -0.3 | -16.9 | -20.0 | 17.9 |
| | 자영자 | -20.9 | -19.4 | 13.6 | 0.5 | 90.0 | -11.9 |
| 무급가족종사자 | 4.0 | -7.1 | | 1,279.7 | -10.1 | -1.9 | 33.1 |
| 무직 | -12.0 | -8.7 | | -2.7 | -21.2 | -18.6 | 18.2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44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표 3-23〉 종사상지위 변동(2018~2020년)에 따른 소득 변화(작년 한 해
균등화 가구소득)

| | | 2018년 소득(만 원) | | | | | |
|------------------------|-----|--------------------------|-----------|--------|-------|-------------|--------|
| t+1(2020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6,696 | 4,122 | 6,787 | 5,511 | 11,255 | 6,157 |
| 임시일용직 | | 4,995 | 4,608 | 5,008 | 4,319 | 4,990 | 4,181 |
| 자영업자 | 고용주 | 10,114 | 4,373 | 9,384 | 6,901 | 5,639 | 7,252 |
| | 자영자 | 4,808 | 4,084 | 8,228 | 5,644 | 10,807 | 3,505 |
| 무급가족종사자 | | 4,727 | 3,951 | 6,082 | 4,569 | 6,576 | 4,171 |
| 무직 | | 6,074 | 4,423 | 7,863 | 6,907 | 4,453 | 4,879 |
| | | 2020년 소득(만 원) | | | | | |
| t+1(2020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8,212 | 4,931 | 7,730 | 5,046 | 7,327 | 6,262 |
| 임시일용직 | | 6,666 | 4,819 | 5,826 | 5,035 | 6,875 | 4,060 |
| 자영업자 | 고용주 | 8,796 | 3,886 | 10,370 | 6,574 | 2,846 | 18,396 |
| | 자영자 | 4,681 | 3,049 | 7,696 | 5,404 | 4,670 | 2,786 |
| 무급가족종사자 | | 5,499 | 4,012 | 11,142 | 5,394 | 6,321 | 4,306 |
| 무직 | | 6,365 | 4,491 | 8,074 | 5,814 | 3,566 | 5,692 |
| | | 2018~2020년 월평균 소득 변화율(%) | | | | | |
| t+1(2020년) t(2018년) |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무직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
| 상용직 | | 22.6 | 19.6 | 13.9 | -8.4 | -34.9 | 1.7 |
| 임시일용직 | | 33.5 | 4.6 | 16.3 | 16.6 | 37.8 | -2.9 |
| 자영업자 | 고용주 | -13.0 | -11.1 | 10.5 | -4.7 | -49.5 | 153.7 |
| | 자영자 | -2.6 | -25.3 | -6.5 | -4.3 | -56.8 | -20.5 |
| 무급가족종사자 | | 16.3 | 1.5 | 83.2 | 18.1 | -3.9 | 3.2 |
| 무직 | | 4.8 | 1.5 | 2.7 | -15.8 | -19.9 | 16.7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한 자영업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바, 그 이전 시기 노동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와는 다른 소득 변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주로 머물러 있는 경우 소득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주에서 자영자로 이동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17.1% 감소해 자영업 내부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영자의 경우 2019년 자영자에서 2020년에 고용주로 이동한 경우를 제외하면(5.2% 증가), 자영자로 머물거나(3.5% 감소)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경우에도 모두 소득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라면, 근로소득에 자산소득과 이전소득 등이 더해진 가구소득은 개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갖고 살고 있는지, 즉 개인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 3-21>은 2018~2019년 기간 동안 종사상지위 변동에 따른 균등화 가구소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고용주에 머문 경우 가구소득이 9,097만 원에서 9,741만 원으로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에서 자영자로 이동한 경우 소득이 7,438만 원에서 7,522만 원으로 1.1%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표 3-18>에서는 고용주에서 자영자로의 전환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소득 감소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자의 경우, 2018년 자영자에서 2019년에도 자영자를 유지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로 이동한 경우에도 소득이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3-18>에서 자영자에서 고용주로의 전환이 월평균 소득을 18% 이상 증가시킨 것과 상반된 결과로, 자영자에서 고용주로 이동하면서 다른 가구원의 소득 감소가 동반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종사상지위 변동에 따른 가구소득의 변화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표 3-22 참조),

2019년 고용주에서 2020년에도 고용주로 머무는 경우 가구소득이 0.3% 감소하였으며, 자영자로 이동한 경우 소득이 16.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 자영자로 머문 경우 소득이 0.5% 증가하였으며, 고용주로 전환한 경우 가구소득이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19>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9년 고용주였던 경우, 2020년에 고용주에 머물거나 자영자로 이동한 경우 모두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시기 다른 가구원의 실직 또는 소득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2019년 자영자에서 2020년 고용주로 이동하거나 자영자에 머문 경우에는 개인 월평균 소득보다 가구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자의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 활동이 같은 시기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제5절 소 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018년)~23차(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노동이동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도 고용주보다 자영자의 노동이동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집단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노동 시장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만 이러한 노동이동이 대체로 소득 감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자의 노동이동이 양질의 임금 일자리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60세 미만에 비해 자영업자의 종사상지위 변동 확률이 더 낮은 반면, 노동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미취업자로의 이동이며 임금 일자리로의 이동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 계층별로는 노동 이동성의 차이가 자영자의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용주의 경우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타 종사상지위로의 이동확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체로 노동이동이 임시일용직 또는 미취업 상태로의 이동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자영업의 노동이동이 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아닌 더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의 재취업일 가능성이 크고, 자영자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라도 소득 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자영업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30%가 넘는 60세 이상의 경우 노동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실업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층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이동을 통해 저소득 지위를 개선하기 힘든 한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들을 빙곤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자영업자 경비율 연구

제1절 연구 목적과 범위

자영업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만큼 자영업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수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수입에서 경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은 과거에 비해 소비부문의 신용카드, 모바일 앱 등 전자결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의 경비 금액은 여전히 자영업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등 일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금액의 일정수준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비로 인정되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하며, 경비율에는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수입금액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이러한 경비율 제도를 적용받아 소득을 추계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비율 제도의 제도적 함의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겠다. 첫째, 경비율 제도는 경비 관련 증빙서류가 부재하거나 그러한 서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해 준다. 둘째,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특히 단순경비율의 경우) 경비수준을 실체보다 높게 상정하여 과세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6자리 업종수준별로 경비율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할 때, 고시된 경비율은 업종별 실제 경비수준을 적절하게 추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경비율의 네 번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현재의 국세청의 고시된 경비율 수준이 실제 경비율의 근사치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업자의 실제 경비 금액을 연구자 역시 파악하거나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통계청 조사자료에 기반한 본 분석에 대해서 혹자는 정부 기관에 의하여 공식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사업체인 경우 대부분이 기장신고 사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자료에서 파악된 비용 정보 역시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수입금액이 낮은 사업체에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가능한 한 경비율의 잠재적 적용 사업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수입금액이 낮은 사업체의 비중이 업종별로 다를 수 있는 등, 적어도 조사자료로부터 업종별 이질적 특징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비율 제도의 과급효과가 업종별로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을 작성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기피하는 사업자의 경비수준을 제대로 포착하기에는 이러한 공식적인 조사자료가 갖는 한계는 염연히 존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대면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제2절 경비율 제도와 고시 경비율 현황

1. 경비율 제도³⁾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장부란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장부를 의미한다. 복식부기장부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에 대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편장부는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반면, 복식부기장부는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는 이중기록을 해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회계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서식에 따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장작성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기장을 하더라도 기장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경비율 제도는 이러한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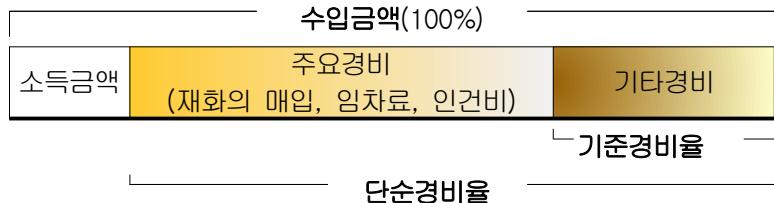
2001년 이전에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현재 단순경비율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2년 당시,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데도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표준소득률을 선택한 바 있었으며, 개인사업자 340만 명 중 과세미달자 200만 명을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140만 명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서 60만 명이 장부를 기록, 무기장 사업장은 80만 명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고 있었다.

3) 본 절의 내용은 국세청의 국세신고안내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https://www.nts.go.kr/nts/cm/cntrnts/cntrntsView.do?mi=2230&cntrntsId=7669> (접속일: 2022. 3. 24)

이러한 표준소득률 제도는 195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산정하였으나, 업종별 획일적인 과세소득 선정으로 사업자 간 불공평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오늘날과 같은 경비율 제도가 도입되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소득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림 4-1) 경비율 제도 도식화



자료 : 국세청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그림 인용,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5959b6aca434ad15442ba08cef228bd&mi=2233> (접속 일 : 2022년 3월 25일)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기타경비로 구분하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 인정되고, 기타경비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제시되는 ‘주요경비’란 재화의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의미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강화된 증빙수취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일자리안정자금}) * (1 - \text{단순경비율})$$

한편, 기준경비율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quad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기준경비율}\end{aligned}$$

52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설정한다.

〈표 4-1〉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상한

- 추계소득금액 계산(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 귀 속 기장의무 | 2007 | 2008 | 2009 | 2010~ 2015 | 2016~ 2019 | 2020 |
|-------------|------|------|------|---------------|---------------|------|
| 간편장부대상자 | 2.0배 | 2.1배 | 2.2배 | 2.4배 | 2.6배 | 2.8배 |
| 복식부기의무자 | 2.4배 | 2.6배 | 2.8배 | 3.0배 | 3.2배 | 3.4배 |

자료: 국세청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표 인용,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5950b6aca434ad15442ba08cfef228bd&mi=2233> (접속일: 2022년 3월 25일)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제시되어 있다(표 4-2 참조).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영143 ③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며(영143 ⑦).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조특법§128조①).

한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하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⁴⁾

4) 자가사업자에 대해 임차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자가사업자란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표 4-2〉 복식부기 의무기준 및 경비율 적용 기준

|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 경비율 적용 | 단순 경비율 적용 |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이상자 | 3억 원 미만자 | 6천만 원 이상자 | 6천만 원 미만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유통업 | 1억 5천만 원 이상자 | 1억 5천만 원 미만자 | 3천6백만 원 이상자 | 3천6백만 원 미만자 |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이상자 | 7천5백만 원 미만자 | 2천4백만 원 이상자 | 2천4백만 원 미만자 |

주: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자료: 국세청 웹페이지(국세신고안내 관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접속일: 2022년 3월 24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하고 있다. 업종분류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1.13.)를 따른다.

보다 구체적인 제도 세부사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수입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로, 그 예시로서는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생산설비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단,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않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간주함.

금액을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영208 ⑤ 2호, 영143 ④ 2호).

또한 공동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을 이용하여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다음으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주업총수입금액} + \text{주업종외수입금액} \times \left(\frac{\text{주업총수입}}{\text{주업종 외수입}} \right)$$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장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무기장 소득/종합소득금액)*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단,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 원) 제공한다.

한편, 인적용역 제공자(국세청 업종코드 94****)의 경우 단순경비율(기본율과 초과율)을 적용한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4천만 원까지는 단순경비율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초과율을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가능하다.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종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표 4-2>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일반경비율 등을 적용하게 된다. 아래의 <표 4-3>에서는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때의 경비율 적용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4천만 원 이하분 및 4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경비율은 일종의 단순경비율일반율과 단순경비율초과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표 4-3>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비율 적용기준

| |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 | 소득률(1-단순경비율) | |
|--------|--------|--------------|--------------|--------------|--------------|
| | | 4천만 원 이하분 | 4천만 원 초과분 | 4천만 원 이하분 | 4천만 원 초과분 |
| 보험모집인 | 940906 | 77.6% | 68.6% | 22.4% | 31.4% |
| 방문판매원 | 940908 | 75.0% | 65.0% | 25.0% | 35.0% |
| 음료품배달원 | 940907 | 80.0% | 72.0% | 20.0% | 28.0% |

자료 : 국세청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표 인용,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5959b6aca434ad15442ba08cfef228bd&mi=2233> (접속일 : 2022년 3월 25일)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다른 인적용역 사업자 대비 상대적인 과세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인적용역 사업

5) 단, 일반적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니므로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56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자는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7천5백만 원 구간에 있을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보험설계사 등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례업종 해당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연말정산상의 소득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주요경비 및 확인 방법은 아래의 <표 4-4>와 같이 정의된다.

〈표 4-4〉 주요경비 정의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 항목 | 세부 정의 | 비고 | 증빙서류 제출방법 |
|---------------------|--|---|--|
| 제화의 매입 비용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과 동력·열 등 판권 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입 원재료 매입 과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의체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 음식, 숙박, 창고, 통신, 보험, 수수료, 수선비, 사업서비스 등, 기부금 등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정규증명서류 정규증명서류 수취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사실 확인기능한 영수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정규증명서류 미작성 시) |
| 외주가공비 운송업 운반비 |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기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

<표 4-4>의 계속

| 항목 | 세부 정의 | 비고 | 증빙서류 제출방법 |
|-----------|--|--|---|
| 입차료 금액 | <p>직접 사용하는 건출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입차하고 그 입차료로 지출한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료는 입차료에 비포함 백화점 업점업체의 입차료로 지급하는 사례는 해당 오픈마켓 입점자가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입차료 비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서류로 입차료에 비포함 정규증명서류 수취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사실 확인 가능한 영수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정규증명서류 미작성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정규증명서류 금여 및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위와 같은 서류 제출 없는 부득이한 사유 존재한 경우, 소득 지급받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되고, 직접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 인건비 금액 | <p>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일용근로자로서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식사, 페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인건비 비해당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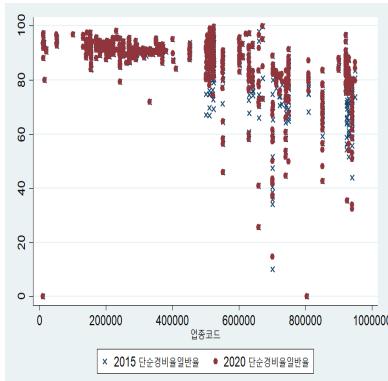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2022)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2. 고시경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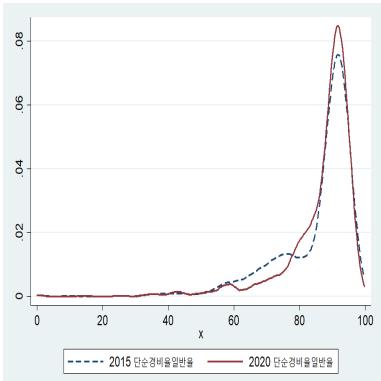
국세청 고시 경비율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과 2020년 경비율을 업종별로 비교하면 다음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비교 : 2015년 vs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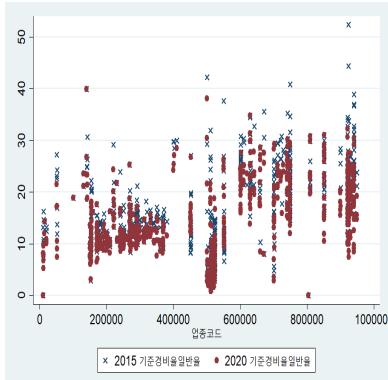
(a) 단순경비율 비교: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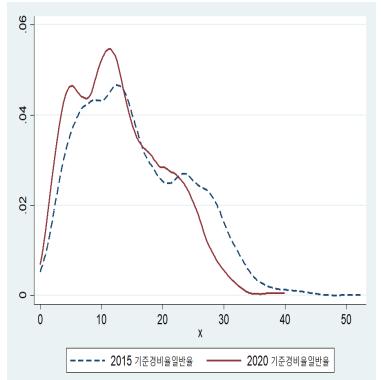
(b) 단순경비율 비교: 확률밀도함수



(c) 기준경비율 비교: 업종별 분포



(d) 기준경비율 비교: 확률밀도함수



자료: 국세청 경비율 발간 책자의 각 연도 자료 기반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의 (a)와 (c)의 경우, 2015년 대비 2020년에 단순경비율은 높아지고, 기준경비율은 낮아진 업종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2]의 (b)와 (d)의 확률밀도함수에서 이러한 추세를 재확인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2015년 기준 경비율 60~75% 구간에 자리한

업종의 경비율이 2020년에는 75~90% 구간으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경비율의 분포가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준경비율 수준이 하향 조정됨을 의미한다.

요컨대, 단순경비율 적용 집단(최하위 매출)에 대해서는 경비율 수준 상승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감소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집단(중간 단계 매출)에 대해서는 경비율 감소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조사된 경비율과 고시 경비율 비교

1. 분석자료

분석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청의 MDIS를 통해서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9인 이하),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운수업조사자료를 다운로드하였다. 공공형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있다. 경비율이 국세청 업종(6자리)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할 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대분류 코드 포함 5자리) 단계까지의 자료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세분류 까지의 자료를 입수하고자 했다.⁶⁾ 또한,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서비스업, 광업제조업, 운수업조사자료에 국한한 것은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에 대한 정보가 공공용 자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주점업의 경우 ‘재료비’ 정보가 인가형 자료에만 제공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업종코드가 10자 개정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조사자료를 선택하였다.

앞서 언급한 4개의 자료를 모두 세로로 결합(appending)한 후, 사업체

6) MDIS에서 데이터를 선택할 때, 세부적인 지역정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개별 사업체의 세세분류까지의 업종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의 표준산업분류가 국세청 업종과 연계되는 경우만 남겨놓은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⁷⁾ 세로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각 조사자료 차원에서 영업이익(본고의 정의상 ‘실제비용’), 영업비용(본고의 정의상 ‘실제소득’), 매출액(혹은 수입금액) 중의 하나라도 결측치가 발생하는 사업체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각 조사자료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비용이 결측치로 나타나는 사업체는 삭제하였다.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조사의 경우 19개(0.02%), 9인 이하 광업제조업 조사의 경우 2개(0.0003%), 운수업 조사의 경우 200개(1.5%), 서비스업 조사의 경우 853개(0.46%) 사업체 관측치가 삭제되었다. 조사자료에서 이러한 결측치가 나타난 경우, 해당 사업체의 재무관리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을 함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신고 과정에서 경비율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관된 변수에 기반한 정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관측치를 제외하였으나, 결과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전처리된 각 조사자료를 세로 결합한 후, 이상치 제거를 위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하위 1%와 상위 1%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제거하였다. 이는 22,354개 사업체로 나타났다. 이때까지의 자료에 기반하여 표준산업분류 기준 대분류별 사업체 분포는 <표 4-5>와 같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업에 속하는 사업체 비중이 가장 낮고(0.28%), 제조업 분야 사업체 비중(75.51%)이 가장 높았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의 비중은 10.84%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광업, 제조업, 운수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속하는 사업체는 ‘서비스업’ 사업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대분류 안에서도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표본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매칭이 되는 사업체 건수는 772,724개이며, 매칭되지 않은 사업체는 6,859개로 나타났다.

〈표 4-5〉 분석자료의 대분류 업종별 사업체 분포

(단위 : 개, %)

| 대분류 | | 번호 | 비중 |
|-----|--------------------------|---------|-------|
| 기호 | 코드명 | | |
| B | 광업 | 2,065 | 0.28 |
| C | 제조업 | 566,602 | 75.51 |
| E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3,676 | 0.49 |
| G | 도매 및 소매업 | 81,326 | 10.84 |
| H | 운수업 | 11,597 | 1.55 |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13,902 | 1.85 |
| J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569 | 0.88 |
| L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614 | 0.75 |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320 | 1.78 |
| N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1,899 | 1.59 |
| P | 교육 서비스업 | 7,336 | 0.98 |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4,103 | 0.55 |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841 | 1.31 |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2,520 | 1.67 |
| 전체 | | 750,370 | 100.0 |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9인 이하, 10인 이상), 운수업조사 공공형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편, 이렇게 데이터를 정제하더라도 ‘고시경비율과 실제경비율 간 비교’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분석을 수행할 때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단계에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세세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표본이 상당히 한정적인 경우 그러한 표본에 기반한 분석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각 사업체가 수입금액에 기반하여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세 가지 유형(이하 ‘경비처리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가정하고,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별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개수가 20개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해당 세세분류 자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74

개 세세분류 업종 중에서 35.22%에 해당하는 343개 업종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대분류 기준으로 그렇게 삭제된 세세분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면 <표 4-6>과 같다. 광업(B),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등 다수의 대분류 업종이 표본 미달 세세분류 업종의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대분류 업종별 표본미달 세세분류 삭제 비중

(단위 : 개, %)

| 기호 | 대분류 코드명 | 삭제대상 세세분류 비중 | |
|----|--------------------------|-----------------|-----|
| | | 세세분류 전체 개수 | |
| B | 광업 | 50.00 | 10 |
| C | 제조업 | 22.90 | 476 |
| E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0.00 | 18 |
| G | 도매 및 소매업 | 37.57 | 181 |
| H | 운수업 | 46.34 | 41 |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46.43 | 28 |
| J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4.05 | 37 |
| L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8.18 | 11 |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5.00 | 40 |
| N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62.50 | 32 |
| P | 교육 서비스업 | 33.33 | 18 |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8.57 | 14 |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1.28 | 39 |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69 | 29 |
| 전체 | | 35.22 | 9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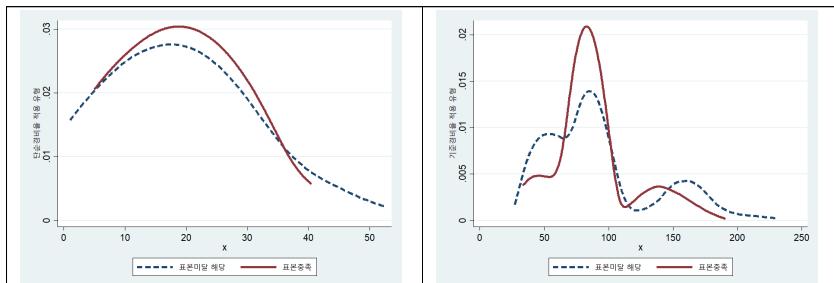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9인 이하, 10인 이상), 운수업조사 공공형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8) 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이때에도 결과(357개 세세분류 삭제)는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표본미달’ 세세분류 업종이 그렇지 않은 ‘표본충족’ 세세분류 업종에 비하여 매출액분포가 크게 다르다면 이는 선택편의의 문제로 인하여 결과해석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표본미달’ 세세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면, 이러한 세세분류 업종을 제거하는 것이 잠재적 추계소득 사업체를 표본에서 제거하는 셈이 되므로 문제가 적지 않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4-3]의 첫 번째 패널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유형의 경우 ‘표본충족’ 세세분류 업종의 평균 매출액분포(실선)과 ‘표본미달’ 세세분류 업종의 평균 매출액분포(점선)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4-3]의 두 번째 패널에서는 유사한 그래프를 기준경비율 적용 유형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본미달’ 세세분류 업종과 ‘표본충족’ 세세분류 업종의 분포가 동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표본미달’ 세세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일괄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표본미달 문제가 있는 세세분류 업종을 분석대상에서 제거하더라도 ‘고시경비율-실제경비율’ 분석이 여전히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4-3) 표본미달 여부에 따른 매출액 분포 비교

(단위 : 백만 원)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9인 이하, 10인 이상), 운수업조사 공공형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2. 분석결과

먼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체의 특징을 살펴보자(표 4-7 참조). 광업은 단순경비율 적용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단순경비율을 조정할 때, 이에 대한 과급효과가 업종별로 다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체의 주요 경비를 살펴보면, 매입, 인건비, 임차료 중에서 매입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도만 매입 정보가 있고 나머지 업종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체의 경우도 (대분류업종 N을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실질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매입, 인건비, 임차료인 것을 고려할 때,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매입을 주요경비로 산정한 것은 제조업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제조업 사업체의 비용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설계는 일면 합리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산업의 스펙트럼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비제조업 분야에 상대적인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주요 경비 항목에 업종별 이질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실제로, 제조업의 경우 주요경비가 실제경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업종의 경우는 40~50% 정도로 업종 간 상당히 유사하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체의 경우 5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세분류의 평균 영업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다. 반면,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체의 경우 3개의 업종만이 세세분류의 평균 영업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단순비례하지는 않지만, 매출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적용기준으로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다음으로 추정된 경비가 실제경비를 얼마나 근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추정경비가 실제경비에의 근사치로서의 기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정과정을 거쳤음을 서술하고자 한다. 실제경비는 매출액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가 존재한다. 경비율이라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도구인 만큼, 실제 경비가 매출

〈표 4-7〉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체의 특징

| 산업대분류 | 단순 경비율 적용비중 | 주요 경비 | | | | 매출액 | 실체 경비 | 영업 이익 | |
|---------------------------|-------------------|-------|-------|------|-------|-------|----------|----------|--------|
| | | 매입 | 인건비 | 임차료 | (합계) | | | | |
| B 광업 | 25.53 | 5.97 | 19.19 | 3.86 | 29.02 | 5.13 | 2660 | 71400 | -19.15 |
| C 제조업 | 17.49 | 6.73 | 8.79 | 2.18 | 17.70 | 25.43 | 1624 | 14220 | -7.28 |
| G 도매 및 소매업 | 25.36 | 13.29 | 3.33 | 2.93 | 19.55 | 78.80 | 3165 | 24.90 | 6.75 |
| H 운수업 | 20.77 | 3.90 | 8.03 | 1.89 | 13.82 | 58.22 | 17.15 | 22.38 | -5.23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21.74 | 0.00 | 0.94 | 2.61 | 3.55 | 24.60 | 20.68 | 14.33 | 6.35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0.55 | 0.00 | 9.98 | 2.41 | 12.39 | 50.47 | 17.84 | 23.46 | -5.62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7.61 | 0.00 | 4.42 | 5.51 | 45.93 | 52.80 | 8.37 | 90.10 | -81.73 |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4.09 | 0.00 | 11.80 | 1.92 | 13.72 | 54.49 | 11.78 | 20.88 | -9.10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3.73 | 0.00 | 13.89 | 2.44 | 16.33 | 59.19 | 13.25 | 24.60 | -11.35 |
| P 교육 서비스업 | 13.64 | 0.00 | 2.67 | 3.14 | 5.81 | 49.15 | 14.04 | 11.23 | 2.81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68 | 0.00 | 1.55 | 2.57 | 4.13 | 51.73 | 12.53 | 7.98 | 4.55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9.40 | 0.00 | 3.10 | 2.79 | 5.88 | 47.84 | 13.22 | 12.27 | 0.95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25.30 | 0.00 | 6.78 | 2.44 | 9.22 | 48.97 | 14.03 | 15.55 | -1.52 |
| 전체 | 19.35 | 6.52 | 7.89 | 2.42 | 16.83 | 56.07 | 18.76 | 45.41 | -4.81 |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9월 이상), 윤수업조사, 공공형 자료 기반으로 처리 작성.

〈표 4-8〉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체의 특징

| 사업대분류 | 기준 경비율 적용비중 | 주요 경비 | | | | 매출액 (실체경비 대비 비중) | 실체 경비 | 영업 이익 |
|---------------------------|-------------------|-------|-------|------|--------|---------------------------|----------|----------|
| | | 매입 | 인건비 | 임차료 | (합계) | | | |
| B 광업 | 25.13 | 35.47 | 46.65 | 8.54 | 90.66 | 13.45 | 131.63 | 710.00 |
| C 제조업 | 23.86 | 31.59 | 18.78 | 4.27 | 54.64 | 45.13 | 83.21 | 201.97 |
| G 도매 및 소매업 | 28.39 | 82.44 | 15.81 | 6.47 | 104.72 | 82.01 | 142.91 | 127.63 |
| H 운수업 | 24.88 | 6.79 | 29.69 | 4.49 | 40.97 | 55.31 | 81.95 | 73.59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33.31 | 0.00 | 9.79 | 7.75 | 17.54 | 30.03 | 75.51 | 59.80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4.17 | 0.00 | 31.23 | 6.33 | 37.56 | 45.98 | 77.71 | 80.88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9.58 | 0.00 | 32.55 | 3.89 | 36.44 | 49.37 | 45.44 | 69.28 |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1.90 | 0.00 | 10.93 | 4.01 | 14.94 | 40.31 | 45.08 | 35.97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26.62 | 0.11 | 17.72 | 5.47 | 23.29 | 52.71 | 44.24 | 42.23 |
| P 교육 서비스업 | 28.91 | 0.00 | 10.68 | 6.98 | 17.67 | 50.84 | 43.94 | 34.57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3.18 | 0.00 | 12.90 | 6.69 | 19.59 | 56.42 | 43.02 | 34.72 |
| R 예술, 스포츠 및 예거관련 서비스업 | 31.18 | 0.00 | 10.65 | 7.24 | 17.89 | 49.58 | 43.47 | 35.84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34.87 | 0.00 | 6.39 | 5.15 | 11.55 | 39.58 | 40.81 | 28.59 |
| 전체 | 25.63 | 33.89 | 17.95 | 5.03 | 56.87 | 56.66 | 88.14 | 121.67 |
| | | | | | | | | 8.59 |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9월 이상), 10월 이상, 윤수업조사, 공공형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경비가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액 측면에서 동일한 값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비용과 실제비용 간의 차분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먼저, 단순경비율 적용자의 경우, 해당 차분값은 추정된 경비금액에서 매출액과 실제경비 중 작은 금액을 제외한 값으로 정의된다. 기준경비율 적용자의 경우는 매출액과 주요경비 금액 간의 차이가 양의 값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만약, 주요경비 금액이 매출액보다 작을 경우, 해당 차분값은 ‘매출액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값’과 ‘실제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값’ 중의 작은 값을 추정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되었다.⁹⁾ 만약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체이고 매출액이 주요경비보다 적을 경우, 추정된 경비금액과 실제 경비금액 모두 매출액을 초과할 것이므로 보정된 경비금액의 차분값은 0원으로 정의한다.

보정된 ‘추정경비-실제경비 간 차분’의 비율값은 차분을 매출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차분비율’이 실제로 0의 값을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차분비율의 변수를 20개의 분위로 구분한 다음에, 0이 속하는 분위구간에 해당 사업체의 차분비율이 존재하는 경우, 보정된 ‘추정경비-실제경비 간 차분’의 비율이 0과 같다고 정의하였다.

[그림 4-4]는 보정된 추정경비 오차가 사실상 없다고 간주되는 사업장의 비율에 대한 분포를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별로 보여준다. 해당 비율이 1의 값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경비가 실제 경비를 잘 근사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4-4](1)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장 비율을, [그림 4-4](2)에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장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사업장이 ‘1’의 값을 달성하는 반면에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0’의 값과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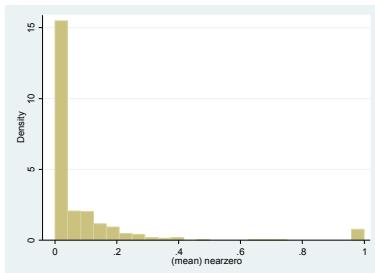
한편, [그림 4-4]에서는 추정된 경비와 실제 경비 간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4-5]와 [그림 4-6]에서는 각각 단순경

9) 실제경비가 주요경비보다 작을 경우, 실제경비가 주요경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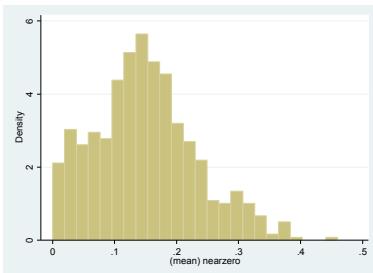
(그림 4-4) 추정경비가 실제경비에의 근사 여부(비율)에 대한 히스토그램

(단위 : 개)

(1) 단순경비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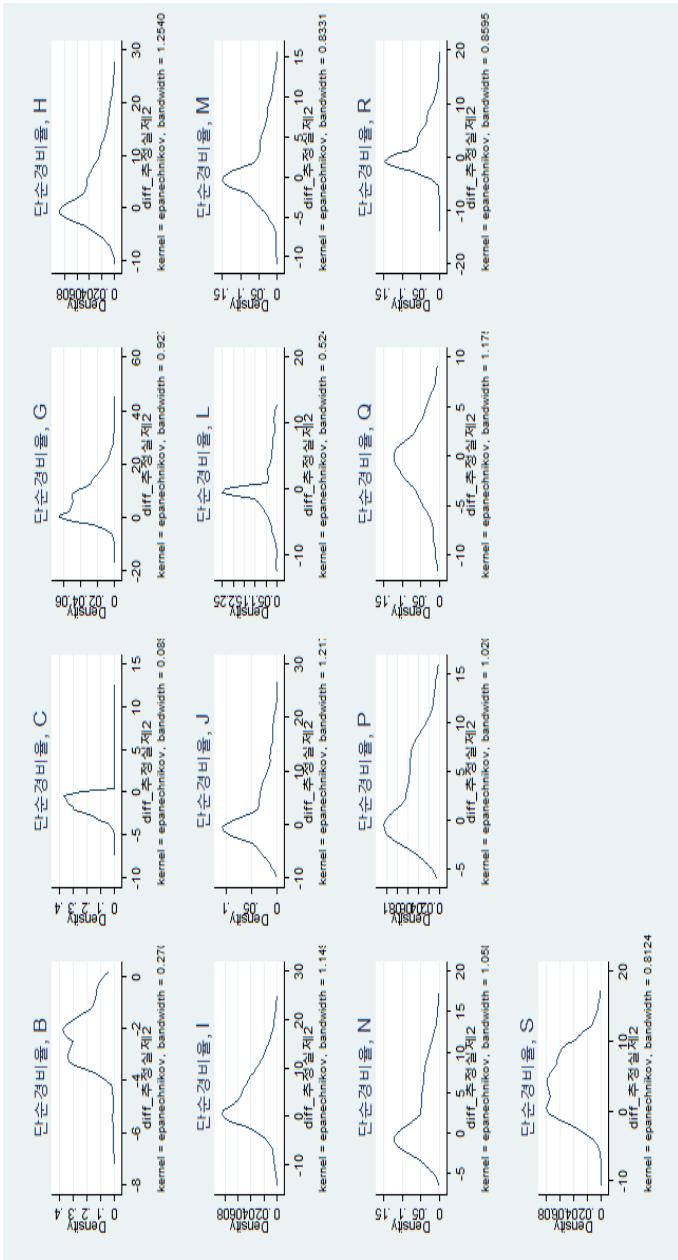
(2) 기준경비율 적용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9인 이하, 10인 이상), 운수업조사 공공형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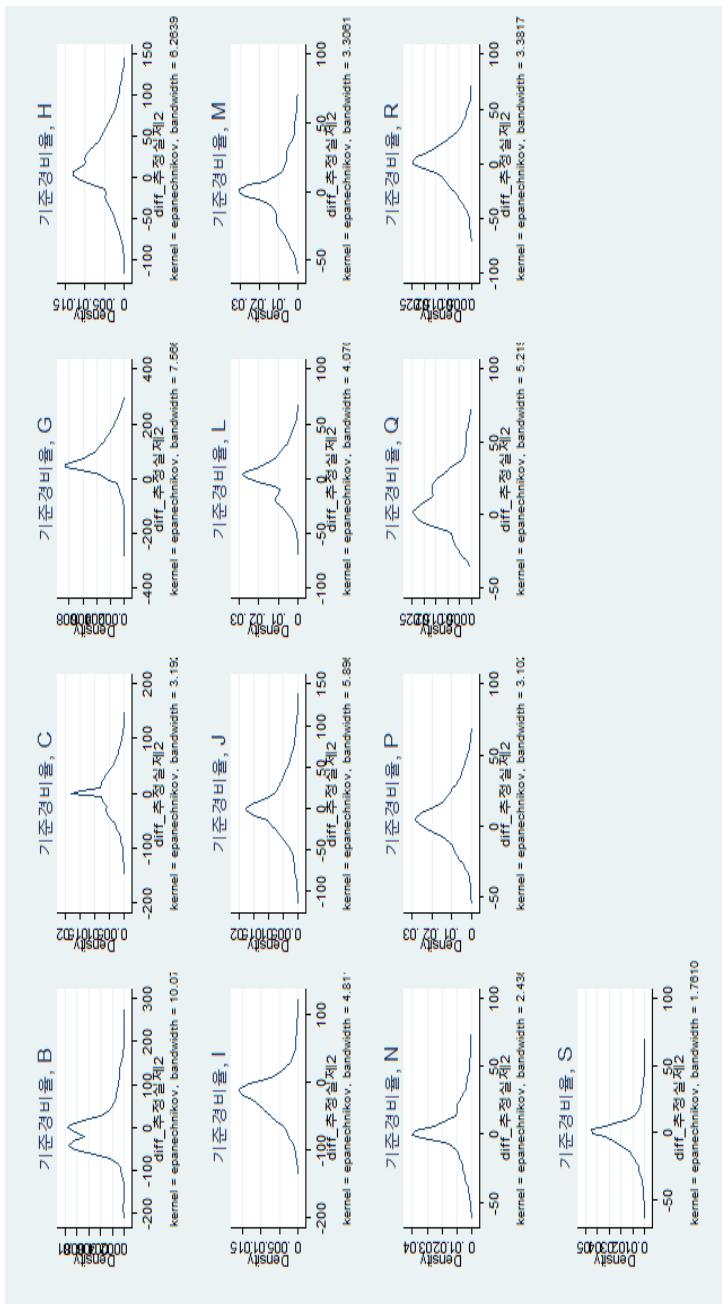
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세세분류별 ‘경비금액의 차분(추정-실제)’의 확률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 축의 변수가 0보다 큰 경우 추정된 경비가 실제 경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로 축의 변수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추정된 경비가 실제 경비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양수값으로(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에,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그러한 치우침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즉, 단순경비율의 경우 실제 경비가 추정된 경비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고, 기준경비율은 실제 경비가 추정된 경비와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5] 세세분류별 '차분'에 대한 확률분포 :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장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체조업조사(9인 이하, 10인 이상), 은수업조사·공공형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4-6] 세세분류별 '차분'에 대한 확률분포 :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장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공업제조업조사(9인 이하, 10인 이상), 운수업조사, 공공형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4-9〉 대부분류 업종별 '보정된 추정경비 오차'에 대한 기초통계량

| 대분류 | 단순경비율 적용 | | | 기준경비율 적용 | | |
|---------------------------|----------------|----------------|----------------|----------------|----------------|----------------|
| | 차분 비율 ≒0 | 차분 비율 ≒0 | 차분 비율 ≒0 | 차분 비율 ≒0 | 차분 비율 ≒0 | 차분 비율 ≒0 |
| B 광업 | -1.57 | -0.06 | 28.54 | 13.46 | 0.06 | 21.77 |
| C 제조업 | -1.42 | -0.09 | 6.86 | 5.53 | 0.04 | 18.28 |
| G 도매 및 소매업 | 6.23 | 0.20 | 16.27 | 80.95 | 0.54 | 4.22 |
| H 운수업 | 2.72 | 0.13 | 8.97 | 13.82 | 0.17 | 14.09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3.51 | 0.17 | 14.07 | -15.88 | -0.20 | 7.64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62 | 0.10 | 17.70 | 3.14 | 0.04 | 16.24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32 | -0.24 | 3.36 | 5.83 | 0.14 | 22.62 |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41 | 0.06 | 6.95 | -2.36 | -0.05 | 15.61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64 | 0.09 | 7.00 | 2.33 | 0.06 | 20.22 |
| P 교육 서비스업 | 2.53 | 0.15 | 10.85 | 5.95 | 0.13 | 10.86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0.33 | -0.02 | 17.02 | 5.14 | 0.11 | 20.59 |
| R 예술, 스포츠 및 예기관련서비스업 | 1.64 | 0.10 | 15.28 | 4.06 | 0.10 | 11.89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3.71 | 0.25 | 6.51 | -2.55 | -0.05 | 15.56 |

자료: 2020년도 서비스업조사, 광업체조업조사(9인 이하), 10인 이상), 운수업조사, 공공행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제4절 소결 및 정책 함의

1. 내용 요약

사업자의 사업상의 실제 경비를 적절하게 추정하는 것이 소득추계제도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표준산업분류의 세세업종 단위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0년도 광업제조업 조사(9인 미만, 10인 이상), 운수업, 서비스업 조사의 공공형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을 하였다. 해당 여기에 포함된 대분류 업종은 총 13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애초부터 모든 업종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자료가 도출된 것이 아닌 만큼 업종별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할 것이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업종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매년 초에 직전 귀속연도에 적용될 경비율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고시 6자릿수 업종분류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기준 세세분류단위(대분류 포함 5자릿수)의 업종분류와의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계표를 이용하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별 고시 경비율이 동 단위의 조사 경비율을 얼마나 근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사업장의 업종과 매출별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의 적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의 표본 자체를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체 표본과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체 표본을 구분하였다.

분석을 수행할 때에 편의상 두 가지의 가정을 하였다. 첫째, 사업체에 따라서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장을 작성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가능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기준경비율 제도하에서는 주요 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각종 증빙서류를 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한 증비서류도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바, 기준경비율보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비율 수준은 직전연도 매출금액과 당해연도 매출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획단면 자료만 활용했기 때문에 편의상 연도별 매출액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분석에 당해연도 매출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단순경비율초과율을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경비율 적용 유형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게 되면, 세세분류 업종별로 관측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유의미한 통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임의로 관측치가 20개 미만인 세세분류 업종은 제거하였는데, 974개 세세분류 업종 중에서 35.22%에 해당하는 343개 업종이 삭제되었다.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우려되어 매출액분포를 검토한 결과, 비록 실질적인 분포 차이는 존재하지만 매출액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미만 관측치를 보유하는 세세분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 표본에 대해서만 고시 경비율과 조사 경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때 목표는 경비율이 조사 경비율을 얼마나 근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비교는 어디까지나 소득세에의 영향이라는 점이다. 만약 조사 경비율이 매출액을 초과할 정도로 큰 경우, 이때의 조사 경비율은 당연히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고시 경비율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시 경비율이 90% 이상이라서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것과, 조사 경비율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는 소득세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고시 경비율이 90%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업종의 조사 경비율이 사실 매출액을 초과할 정도로 높을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는 고시 경비율과 조사 경비율의 차분을 정의할 때 조사 경비율(기준경비율에서의 주요 경비 포함)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본고에서 고시 경비율과 조사에 기반한 실제 경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추계소득제도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실제 경비보다는 높게 설정되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실제 경비와 더 가깝게 설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정된 경비율 간극이 0에 가까운 비율('근사비율')을 검토하면, 단순경비율의 경우 12.26%인 반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15.35%로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장에서 고시 경비율의 성과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경비율 적용 표본에서 근사비율이 높은 업종은 광업(28.5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02%) 등으로 나타났으며, 근사비율이 낮은 업종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3.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6.51%) 등이 있었다. 반면 기준경비율 적용 표본에서 근사비율이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22.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0.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59%) 등으로 나타났으며, 근사비율이 낮은 업종에는 도매 및 소매업(4.22%), 숙박 및 음식점업(7.64%) 등으로 나타났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근사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업종에는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은 기준수입금액 전후로 사업장의 비용구조 등 사업장의 특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고시 경비율과 조사 경비율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순경비율 분석표본에서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조사 경비금액이 고시 경비금액보다 대분류 평균 기준 더 높게 나타났다(각각 157만 원, 142만 원, 132만 원). 이러한 경비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비교를 해보면 처음 2개 업종은 “경비금액 오차”/“매출액”的 비율이 0.07~0.09인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0.24로 실질적인 간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3개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고시 경비율이 조사 경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체에 대하여 관대한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준경비율 분석표본에서는 조사 경비금액이 고시 경비금액보다 높게 나타는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588만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6만 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55만 원)으로 나타났다(괄호 안 수치는 ‘조사 경비금액에서 고시 경비금액을 제한

금액'임). 이러한 경비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볼 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해당 비율이 0.20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두 업종의 비율은 0.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운수업과 같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경비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정책 합의

경비율 제도 및 고시 경비율의 조사 경비율에의 근사성을 비교해볼 때 다음의 정책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겠다.

첫째, 경비율인 6자릿수에 따라 너무 세부적으로 설계된 것이 과연 이상적인지 의문제기가 가능하다. 결국 경비율은 소득세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비율이 국세청 고시 6자릿수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실제 소득세율이 그만큼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이미 존재하는 세액 및 소득공제 제도와 함께 이러한 경비율은 과세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세부적인 경비율 제도가 실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6자릿수별로 이질적인 경비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는다.

둘째, 경비율 적용 여건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도별 매출 변동성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기준경비율에서 인정되는 주요경비 범주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요경비 항목에 대부분 매입, 인건비, 임차료를 포함하는데 이는 제조업 중심의 경비율 제도틀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운수업의 경우 유류비 등이 추가될 수 있는 등, 예외조건이 있는 것처럼 다른 업종 역시 업종별 특이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비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증빙자료 없이는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장은 증빙자료에 유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기준경비율은 하나의 옵션이며, 이 옵션 자체가 증빙자료 관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진 않을 수 있다.

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고시 경비율 수준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자체가 소득세 측면이나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세혜택은 복지장벽(welfare wall)과 같이 취약 사업체 집단으로 영구적으로 존속하게끔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제의 거래의 상당부분이 이미 전자결제 방식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사업체의 매출액이 영세하더라도 수입 및 비용 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인건비(지급명세서 자료), 임대료(실시간 부동산 임대소득자료), 매입비용(부가가치세 자료)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단, 경비율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유발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세 사업체의 납세협력비용이 어떠한 지점에서 발생하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단순히 어떤 특정 연도의 사업체의 매출액이 단순히 낮다고 해서 영세 사업체라고 하기보다는 다년간 자료를 통해서 영세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 약

제2장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 통계를 비교하여 보았다. 자영업자는 취업자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용어로, 가계조사에서 설정한 개념이다. 자영업자는 크게 고용주와 자영자로 나뉜다. 자영업자에는 특수고용종사자,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포괄범위는 소상공인보다 넓다.

국세통계 자료의 사업소득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가 종사상 지위의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두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의 수가 가계조사 통계보다 많다. 또한 가구 조사자료에서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통계에서는 사업장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약 34만 개 증가하였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주류 관련 음식업, 유통 사업체, 여행사, 예식장 등은 감소하였다. 반면, 통신판매업 사업체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커피전문점, 한식 전문점, 실내 스포츠 시설 사업체, 교습소 · 공

부방 사업체가 증가하였다.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의 자영업자 총소득을 비교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이 국민계정보다 크며,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할 때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018년)~23차(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자영업자가 원래의 고용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92.0%이다. 이 비율은 상용직 90.8%, 임시일용직 79.9%보다 높다. 자영업자가 무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5.3%로, 상용직 7.3%나 임시일용직 13.1%보다 낮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자영업자가 고용 지위를 유지하는 비중은 89.2%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상용직 90.7%, 임시일용직 77.1%이다. 자영업자가 이 시기에 무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6.1%로, 상용직(6.5%)과 비슷하고, 임시일용직(16.3%)보다 낮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의 고용지위 변동 확률은 상용직에 가깝다. 자영업자의 고용 지위 안정성은 상용직과 비슷하고 임시일용직보다는 높다.

연령 60세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종사상 지위 간 이동확률을 계산한 결과, 60세 미만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고용 지위 유지 확률이 더 높았다. 고용주와 자영자의 지위를 2년간 유지할 확률이 60세 미만은 각각 61.1%, 72.3%인 데 반해 60세 이상에서는 63.7%와 81.0%로 나타나, 자영업에 머무를 확률이 고령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자영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동 확률은 60세 이상에서 고용주는 10.6%, 자영자는 14.0%로, 60세 미만이 각각 8.4%, 7.6%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계층을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종사상 지위 이동 확률을 계산한 결과, 자영자의 경우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동일 지위를 유지할 확률이 7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 지위에서 벗어나 무직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크

게 증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자영업자 관련 경비율 제도를 검토하였다. 경비율 제도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추계할 때 활용된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고시 6자릿수 업종분류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기준 세세분류단위(대분류 포함 5자릿수)의 업종분류와의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계표를 이용하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별 고시 경비율이 동 단위의 조사 경비율을 얼마나 근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고시 경비율과 조사에 기반한 실제 경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추계소득제도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고시 경비는 실제 경비보다는 높게 설정되는 반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고시 경비는 실제 경비가 유사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정된 경비율 간극이 0에 가까운 비율('근사비율')을 검토하면, 단순경비율의 경우 12.26%인 반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15.35%로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장에서 고시 경비율의 성과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장의 특징이 다르고, 조사 경비율과 고시 경비율 간의 절대적, 상대적 차이가 모두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제2절 결론 및 제안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의 수가 가지조사 통계보다 많다. 또한 가구 조사자료에서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국세통계에서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통계에서는 사업장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체에 관한 통계인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아도,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에도 생활업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국세통계와 국민계정의 자영업자 총소득을 비교하였는데, 2015년 이후에는 국세통계에서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이 국민계정보다 크며,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조사통계와 행정통계에서 자영업자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서 직접 비교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두 통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통계의 정확성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영업 사업체 수와 추세를 파악하고자 할 때 행정통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할 때에도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에서는 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서 고용보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제3장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포함) 자영업자가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확률은 상용직과 비슷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 자영업자 보험 가입이 고용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영향을 준거로 판단하여 볼 수 있다.

경비율 제도는 6자리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경비율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소득세가 산출되는 과정의 가장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소득확정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경비율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매출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연도별 수입금액의 변동성이 큰 업종 혹은 사업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경비율 제도가 갖는 취약사업체 지원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비율 제도는 소득을 간단히 추계하는 제도로, 정확한 소득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과 장기적으로는 양립하기 어렵다. 경비율 추계소득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은 최근의 실시간 소득파

악 인프라 제도의 개선과 맞물려 사업체의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 방향과 그 궤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인건비(지급명세서 자료), 임대료(실시간 부동산 임대소득자료), 매입비용(부가가치세 자료)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세 사업체의 납세협력비용이 어떠한 지점에서 발생하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단순히 어떤 특정 연도의 사업체의 매출액이 단순히 낮다고 해서 영세 사업체라고 하기보다는, 다년간 자료를 통해서 영세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2022),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 노민선(2022), 「소상공인 지원 현황과 정책방안」, 포용재정포럼 2월 월례 모임 세미나 발표문.
- 홍민기(2021),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추진방안」, 구인회 외, 『소득기반 사회보험 구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웹페이지)

- 국세청,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5959b6aca434ad15442ba08cfef228bd&mi=2233>
(접속일 : 2022. 3. 25)
- 국세청, 웹페이지(국세신고안내 관련), <https://www.nts.go.kr/nts/cm/c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접속일 : 2022. 3. 24)

◆ 執筆陣

- 흥민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손연정(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 | |
|-----------|---|
| ▪ 발행연월일 | 2022년 12월 26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김 승 택 원장직무대행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③①④⑦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2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600-7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